

IFRS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송인만 · 노형식

2011. 3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머 리 말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상장기업에 전면 도입한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국제적 회계기준의 추세를 볼 때 공정가치 회계(fair value accounting)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에 수반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회계기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공정가치 회계의 특징과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공정가치 회계의 찬반양론을 검토하고 금융자산에 공정가치를 확대할 때 유의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양질의 단일화된 회계원칙 마련 작업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금융상품 회계처리를 단순화하여 회계정보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회계기준이 복잡하면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금융기관 회계담당자들이 회계기준을 명료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기준으로 생산된 회계정보의 신뢰성마저 저하되게 된다. 본 보고서는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회계기준의 적절성, 시사점 등을 확인하고 향후 K-IFRS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향후 금융상품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확대해 나갈 때 금융회사, 회계기준 제정기관, 외부감사인, 감독기관, 공정가치 평가기관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책당국이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송인만 교수와 본 연구원 금융산업·경영연구실 노형식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보고서 작성에서 설문조사는 추지미 연구원의 큰 도움을 받았으며, 익명의 심사위원과 본 연구원 주례세미나에서의 논평은 보고서의 체계개선과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모두 집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3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 태 준

목 차

요 약

I. 서 론	1
II.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공정가치 평가	4
1.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4
2.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5
3. 공정가치회계	7
III. 관련 연구	18
1. 공정가치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18
2. 금융상품의 처분을 이용한 이익조정	21
IV. 최근의 금융위기와 공정가치 평가	24
V. IASB의 금융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후속 조치	36
1. 현행 IASB의 프로젝트	36
2. 공정가치회계의 우려와 지지	38
3. 금융자산의 인식 및 회계처리	39
4. 손상차손의 인식	45
5.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48
6. 공정가치 측정	50
7. 공정가치 평가전문가 제도	62

Ⅵ.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회계처리 설문조사	70
1. 연구목적	70
2. 연구방법	70
3. 연구결과	71
4. 시사점	77
Ⅶ. 요약 및 개선방향	78
〈첨부〉 설문서 표본	85
참고문헌	91
Abstract	95

표 목 차

〈표 1〉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요약	8
〈표 2〉 공정가치 평가가 적용되는 항목	9
〈표 3〉 공정가치 회계의 발전	10
〈표 4〉 금융상품 관련 국제회계기준 개선 프로젝트	36
〈표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 회계처리	37
〈표 6〉 금융상품의 종류	40
〈표 7〉 금융상품의 분류 및 회계처리	42
〈표 8〉 표본의 선정	71
〈표 9〉 은행의 금융상품 보유 및 관련 손익 현황	72
〈표 10〉 설문조사 결과 요약	74
〈표 11〉 은행별 설문조사 결과	75

그림 목 차

〈그림 1〉 금융부채의 회계처리	49
〈그림 2〉 공정가치서열체계의 적용	59
〈그림 3〉 공정가치 평가전문가 제도	62

요 약

과거 10년간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회계주권을 포기 하면서까지 2011년부터 우리나라 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IFRS는 우리의 회계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주요 특징은 원칙중심의 회계,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공정가치 평가의 확대, 공시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공정가치 평가의 타당성, 그리고 공정가치 평가의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특히 공정가치 평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정가치(fair value)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fair value hierarchy)를 적용하여 측정한다. 공정가치 평가는 미실현보유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익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 많은 금융상품의 경우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공정가치를 적절히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정가치 정보의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공정가치 평가는 자산버블의 주요 원인이며, 버블이 붕괴할 때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은행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회계기준의 적절성과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시사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논란의 검토와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가치 평가를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외부감사인, 감독기관, 평가기관 등의 측면에서 개선하고 확보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공정가치 평가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외부감사인도 금융기관의 평가시스템을 검증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가치평가시스템을 평가하여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평가기관이 자생하도록 육성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상장기업에 전면 도입하도록 결정하였다. 금융기관 중 특히 은행, 증권(선물)사, 자산운용사, 종합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등에 대해서는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2011년부터 IFRS를 전면 도입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IFRS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우리말로 번역하고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경과규정 등을 삭제하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 채택한 것을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차세대 국가 발전모형의 하나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그리고 이를 통한 아시아 지역 금융허브의 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중추가 되는 인프라는 선진화된 회계시스템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회계시스템은 아직도 투명성 면에서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스위스 IMD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국가경쟁력은 평가대상 55개국에서 23위를 달리고 있지만 회계투명성은 아직도 40위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다. 회계투명성의 문제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저평가 받는 현상, 즉 Korea discount를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해 왔다.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 외부감사의 강화 및 감리제도의 강화, 내부통제제도의 설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그리고 2011년부터 상장 기업 및 금융기관에 K-IFRS의 채택 등이 대표적인 제도개선이다. K-IFRS은 재무제표가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원칙을 따르면, 우리나라 회계기준

은 원칙 중심,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정가치 회계, 공시 강화 등의 주요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그리고 회계기준의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공정가치 회계(fair value accounting)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그간 공정가치 회계의 채택을 지연시켰던 요인인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의 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자산은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평가차액을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mark-to-market(MTM) 회계라고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정가치 회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찬반양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앞으로 금융상품, 특히 금융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를 확대해 나갈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강조했던 전통적인 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최초의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해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 매우 세련된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은 일정 수준의 신뢰성만 확보된다면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점차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의 많은 연구결과도 투자자와 같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들은 공정가치 평가에서 발생하는 평가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정가치의 측정에서 충분히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2008년에 촉발된 금융위기에서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가 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주장에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자산 관련 회계기준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왜냐하면 현행의 금융상품 회계

기준은 너무 복잡하고, 부외부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자산 손상의 회계처리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기준, 특히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공정가치 회계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치의 측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비활성시장에서 공정가치는 투입변수, 때로는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예를 들면 경영자의 추정 등이 가치평가에 이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신뢰성 있는 수준으로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공정가치 회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정가치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가치 평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내 그리고 사회적인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를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 회계기준, 감독기관, 외부감사, 금융기관, 평가기관 등의 측면에서 개선하고 확보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금융기관은 항상 금융상품의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후원하기 위해서 감사인도 금융기관의 평가시스템을 검증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가치평가 시스템을 평가하여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평가기관이 자생하도록 육성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통제시스템에 의해서 공정가치 평가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II.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공정가치 평가

1.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1960년대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자본자유화 물결은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급속도로 전개된 후 2000년대 초에 들어와서는 완전자유화에 이르게 되었다. 국경을 초월하여 투자하고 있는 국제적인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각국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의 부족을 자본자유화의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 또는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기업 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자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들의 규제 및 과세문제가 대두되면서 각국 정부로부터도 회계기준의 통일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대표적인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외국증권시장에의 접근 및 자본자유화가 쉬워진다.
- 기업의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이 저렴해진다.
- 회계투명성이 개선된다.
- 국가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개선된다.
- 국내외 증권시장에 중복 상장된 회사들이 이중의 재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비용이 절감된다.
- 각국마다 회계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약화되어 회계기준제정비용이 절감된다.
- 회계교육 및 회계전문가의 자격 상호인증이 쉬워진다.
- 회계규제가 용이해진다.

- 회계문제에 대한 정부 및 압력집단의 간섭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3월에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부터는 비금융회사에 한해 국제회계기준의 자발적인 채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따라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금융기관은 대부분의 경우 비상장기업이라도 K-IFRS를 따라야 하며, 비금융 비상장기업도 그들이 선택하면 K-IFRS를 적용할 수 있다.

2.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우리가 채택할 국제회계기준(IFRS)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IFRS는 원칙주의 회계(principle-based accounting)기준이라고 불리고 있다. 원칙주의(principles-based approach)는 개념체계에 근거한 일반원칙을 강조하는 접근법을 따른다. 따라서 IFRS는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적용 지침을 제공하기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중시하는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예컨대 원칙주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이런 정신에 따라 원칙주의 회계기준에서는 산업별 회계처리기준은 가급적 삼가고 해석서(interpretations)를 가능한 한 발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언하면 원칙주의 회계기준은 ‘진실하고 공정한(true and fair)’ 재무제표의 표시라는 대원칙 또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IFRS는 구체적인 지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IFRS가 각국에서 적용될 때 나라마다 달리 적용되거나, 심지어는 회사마다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원칙주의 IFRS가 심각한 적용문제(implementation problems)를 가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즉 각국은 문화, 법률, 제도 등이 상이

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05년부터 IFRS를 의무 적용한 EU의 경우 나라마다 IFRS의 적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비하여 미국식 접근법은 규칙주의(rules-based approach)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상대적으로 계량적인 지침을 제공한다거나, 산업별 회계기준을 제정한다거나, 많은 해석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회계담당자 및 감사인은 질의회신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현장에서 직면하는 까다로운 회계문제를 의타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회계전문성이 다소 없더라도 회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IFRS 체제 하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규제기관에 대한 질의회신의 기능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IFRS의 채택은 회계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절실히 요구하게 될 것이다.

둘째, IFRS는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따라서 모든 기준서는 연결실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되어 있다. 예컨대, 포괄손익계산서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각각에 대해 지배회사 소유주(owners of the parent)의 몫과 비지배지분(non-controlling interests)의 몫으로 구분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범위의 결정에서 실질 지배력기준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지분율(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에 근거한 판단을 해 왔던 우리나라의 경우 당분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체제인 경우 실질 지배력을 판단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IFRS 하에서는 특수목적 회사를 모두 연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그간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기업의 재무 구조를 다소간 좋게 보이려 했던 관행도 다시 검토되어야 할 분야이다.

셋째, IFRS는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법률 및 제도에 따른 차이와 기업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IFRS의 적용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주되 공시

를 강화하여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유연성이 폭넓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무제표에 IFRS를 그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IFRS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원칙의 해석에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지만 원칙 자체를 이탈하면 IFRS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IFRS를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IFRS는 공정가치(fair value) 회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예전의 회계 기준은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가 주요 평가기준이었다면, 변천해가는 IFRS는 역사적 원가와 함께 공정가치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경우 공정가치 회계가 원칙이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와 공정가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자산(특히 영업권 및 비한정 내용연수를 갖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자산손상 회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은 IFRS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회계기준을 원문에 충실하게 한글로 번역하여, 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라고 부르고 있다.

3. 공정가치회계

〈표 1〉은 자산과 부채의 대표적인 평가기준을 요약하고 있다. K-IFRS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으로 취득원가(상각후원가 포함)와 함께 공정가치 평가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한편, 개별 자산과 부채의 성격에 따라 이들을 변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수취채권을 회수가능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 취득원가주의의 변형인 상각후원가(원가에서 대손가능액을 차감하기 때문)라고 볼 수도 있고, 순실현가능가치(회수할 금액에서 대손가능액을 차감하기 때문)라는 점에서 공정

가치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 평가기준들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별 자산 또는 부채에 적용될 때마다 유사한 개념들이 달리 불리고 있기도 하다. 다른 유사한 예로 자산손상의 평가에서 회수가능액(recoverable amount)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순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순공정가치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용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순공정가치란 공정가치에서 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공정가치를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가의 감정가액, 현재가치 등을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할 수 있다. 감정가액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교적 공신력이 높은 공시지가 및 과세기준 등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K-IFRS에서 공정가치가 적용되는 항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1>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요약

평가기준	대상자산·부채	평가지기
취득원가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자산	취득시, 평가시
순실현가능가치	수취채권(대손충당금), 재고자산(저가주의)	회계기말, 취득시
공정가치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취득한 자산, 재평가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손상자산 등	회계기말, 취득시, 재평가시, 손상평가시
현재가치(사용가치)	장기채권·채무, 손상자산 등	거래발생시, 조건변경시
상각후원가	수취채권, 대여금, 채무증권 등	회계기말
지분법평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주식	회계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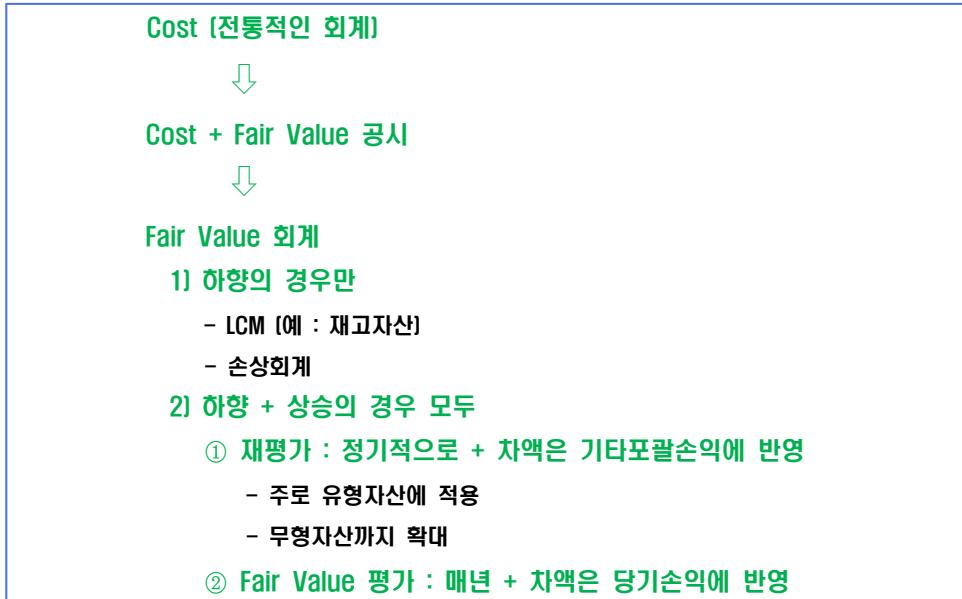
〈표 2〉 공정가치 평가가 적용되는 항목

의무 항목	선택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 / 부채(지정항목) ○ 충당부채 ○ 사업결합 ○ 종업원급여 ○ 주식기준 보상 ○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 생물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부채(공정가치선택권 행사) ○ 유형자산(자산재평가) ○ 무형자산(자산재평가) ○ 탐사평가자산(자산재평가) ○ 투자부동산

주) 저가주의가 적용되는 재고자산, 그리고 자산손상이 적용되는 다른 항목 등도 공정가치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회계는 취득원가주의를 택해왔다. 즉 모든 자산과 부채를 취득 또는 발생한 시점의 원가(cost)로 기록하고, 취득 이후의 기간에도 가치의 변동에 관계 없이 취득원가를 그대로 장부금액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측정의 신뢰성이란 측면에서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세련된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등장하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fair value)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정보를 보여주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재무제표에는 취득원가로 기록하되 공정가치를 추가정보로 주석에 기입하는 접근법을 택했으나 점차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나타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가치를 표시하는 방법도 초기에는 보수적인 접근법으로 주로 공정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만 공정가치로 표시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점차로 하락 뿐만 아니라 상승의 경우에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이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표 3〉 참조).

〈표 3〉 공정가치 회계의 발전



최초 취득시점에서 취득원가가 바로 공정가치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 이후에는 취득원가가 공정가치와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므로 공정가치 회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공정가치 회계에서는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평가차액을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 방식 1 :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마감함.
- 방식 2 : 자본항목(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직접 반영함.
- 방식 3 :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마감함.

K-IFRS에서는 여러 가지 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회계(fair value accounting)를 의무화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가치 정보의 제공을 강조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K-IFRS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정가치의 개념 및 종류, 공정가치의 측정, 평가손익의 반영 및 공정가치회계의 타당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정가치의 개념 및 종류

공정가치(fair value)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공정가치는 다시 교환가치(value in exchange)의 차원에서 측정할 수도 있고, 사용가치(value in use)의 차원에서 측정할 수도 있다. 교환가치는 유입시장에서 측정했을 때 현행원가가 되며, 유출시장에서 측정했을 때 현행유출가치가 된다. 또한 교환가치가 없을 경우 전문가에 의한 감정가액이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도 공정가치의 추정치 또는 대응치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가치는 사용가치의 대표적인 측정치로 간주한다. 이를 앞에서 살펴본 측정속성과 연계할 경우 현행원가, 현행유출가치 및 현재가치가 모두 공정가치에 해당한다.

2) 공정가치의 측정

공정가치의 측정은 활성시장(active market)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fair value hierarchy)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활성시장이 있으나, 유형자산 및 특수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활성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기법(valuation techniques)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한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은 시가를 공정가치로 보며, 시가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금융상품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국내

증권시장과 외국 증권시장에서 동시에 거래되는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국내 증권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를 공정가치로 본다. 또한, 시가가 외국 증권시장에서만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액을 공정가치로 본다. 일반적으로 시장성의 유무에 상관없이 채무증권의 공정가치는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시장성이 없는 자산은 공신력 있는 독립된 평가기관 등이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치 대용치로 보고할 수 있다. 또한 발행기업과 유사한 특성(예를 들면, 신용위험)을 가진 다른 기업의 시장성 있는 금융상품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도 있다.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 평가모형을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데 요구되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유사기업 지분증권의 시가와 비교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기업고유의 특성 때문에 쉽지 않다. 공정가치 측정에 과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든지, 기업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에 기초자료가 되는 과거정보나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공정가치 추정에 필요한 발행기업 내부정보의 입수가 어렵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도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지분증권은 시장성이 없더라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3) 평가손익의 반영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공정가치 평가에서 발생하는 미실현보유손익, 즉 평가손익은 관련 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이하게 처리한다. 예를 들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단기매매금융상품, 공정가치선택

권에 의하여 회사가 지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단기매매금융상품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의 취득으로 인한 성과인 평가손익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매매금융상품은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빈번한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치변동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는 반영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하여 자본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시켜 나간다. 이렇게 누적시킨 금액은 해당 자산이 처분(또는 상각)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에 그대로 존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해당 금융자산의 처분(실현)에도 불구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재량적인 이익관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미실현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하면 기업의 순이익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비교적 장기간 보유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미실현평가손익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도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면 보유기간 동안 각 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택하더라도 자본의 변동성을 방지할 수 없다. 자본의 적절성을 규제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

4) 공정가치회계의 응용

원칙적으로 취득한 시점에서 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여기에는 교환거래에서 취득한 자산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 등이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취득 이후의 공정가치변동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는 취득원가주의를 강조하였지만, K-IFRS에서는 다양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취득일 이후에 공정가치회계를 더 많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가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자산과 부채는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이다. 금융상품은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으로 대별된다. 다시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은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당기순손익에 반영시키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시키는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다른 자산에도 재평가모형재(revaluation model)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공정가치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각종 자산에 대해서 손상차손회계(impairment accounting)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정가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장기화폐성 자산과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도 공정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5) 공정가치회계의 타당성과 문제점

공정가치는 현재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투자와 신용판단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보다 유용하다고 본다. 공정가치가 의사결정에 유용하다고 보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회계는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여 결정된 정보, 즉 기업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의 현재가치를 반영한 정보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보다 적합한 정보가 된다.

둘째, 자산의 공정가치는 금융상품을 일정시점에 매수하고 미확정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영자 의사결정의 성과를 가장 잘 반영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고정

이자부 금융상품에 투자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자율이 하락했다면 당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상승하고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이로 인한 평가이익 정보는 경영자가 변동이자부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했음을 보여준다. 즉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공정가치 변동은 경영자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적절히 투자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공정가치에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예를 들면 이자율의 변동 등)이 발생한 기간에 즉시 반영되기 때문이다.

셋째, 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면 경영자가 선택적으로 이익거래를 할 수 있다. 이익거래(gain trading)란 미실현보유이익이 발생한 금융상품은 처분하고, 미실현보유손실이 발생한 금융상품은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를 cherry-picking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이익거래로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경영자의 이익조정, 나아가서는 분식회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금융자산의 보유동기가 계약상 현금흐름(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회수인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가 목적적합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금융상품을 실제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공정가치는 회수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기에 실제로 회수하는 금액과는 전혀 관련 없는 기회손익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발행자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만기가액이 실현될 것이므로,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만기 이전에 계상되었던 미실현보유손익이 만기에 소멸되며 손익에 반대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제공하는 계약상의 현금흐름 수취가 주요 목적인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가치의 가변성과 평가기법에 의한 공정가치 측정은 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견해에 따라 지금껏 역사적원가주의가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목적적합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다소 신뢰성이 떨어지더라도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아 공정가치회계가 점점 지지를 받아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자.

가. 경영자의 의도에 따른 측정

유사한 자산이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원가로 측정되기도 하고 공정가치로 측정되기도 한다. 이는 회계기준에서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분류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나. 이익거래의 가능성이 상존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미실현보유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공정가치가 변동한 자산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이익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K-IFRS에서는 미실현보유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더라도 차후에 당해 미실현보유손익이 실현될 때 이를 당기순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 목적적합하지 않은 공정가치

상각후원가가 공정가치보다 목적적합하다고 보기도 한다. 왜냐하면 상각후원가는 취득의사결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되는 의사결정의 이익효과, 그리고

자산에서 궁극적으로 회수될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는 기업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나 사건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현될 때까지 재무제표에 인식해서는 안 되는 미실현보유손익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Ⅲ. 관련 연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보고의 목적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 정보가 미래에 대한 예측치를 반영하는 것이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함이 자명하다. 이는 또한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치의 현재가치로 추정되는 공정가치 정보가 보다 유용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재무제표에 다양한 측정 척도가 혼재하여 있다면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침해되어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의 국제적 추세는 가능한 한 공정가치 정보를 많이 이용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기까지는 측정 척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먼저 IASB가 캐나다 회계기준위원회에 의뢰하여 도출된 보고서(Measurement Bases for Financial Accounting)에서는 공정가치가 포괄적이고 내부적으로 일관된 유일한 측정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다른 연구들(Watts 2003, Watts 2006, Ball 2008 등)은 공정가치는 그 측정에서 신뢰성 문제가 있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통제하는 데 취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 투자자의 입장에 편향되어 오랫동안 사회의 진화과정에서 생존한 원가주의를 폐기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다.

1. 공정가치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공정가치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정가치 정보가 다른 정보보다 주가를 보다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Barth

(1994), Chambers 등(2006), 및 Danbolt와 Rees(2008)의 연구 등이 있다. 먼저 Barth(1994)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로 평가된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통제 한 이후에도 해당 은행의 주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증분효과를 갖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정보는 역사적 원가 정보에 비해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이용자들이 취득원가에 의한 유가증권 정보보다는 시가정보를 더욱 신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사결정에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공정가치에 기초한 유가증권 관련 손익 중 실현 혹은 미실현 여부에 따라 시장반응이 상이한 지를 검증하였다. 당해 실증분석 결과는 실현된 유가증권 처분손익의 주가배수가 미실현된 유가증권평가손익의 주가배수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hambers 등(2006)은 미국의 SFAS No.130(Reporting Comprehensive Income) 적용 이후에 포괄손익이 가치관련성을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포괄손익항목 중에서도 특히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주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평가차액을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포함시키지 않고 포괄손익에 반영시키는 경우에도 기업의 가치와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anbolt와 Rees(2008)은 영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및 펀드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가치와 역사적원가를 가치적합성, 신뢰성 및 편의성의 측면에서 상호 비교했다. 영국은 부동산투자회사와 펀드투자회사의 대부분이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므로 공정가치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예상과 같이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순이익이 역사적원가를 이용한 당기순이익보다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먼저 송인만 등(2000)은 주석으로만 공시되는 유가증권평가차액 정보가 주가수준을 설명함에 있어서 순

자산 장부가치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가수익률을 설명함에 있어서 유가증권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에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상철 등(2002)은 유가증권처분손익과 평가손익의 주가배수 크기를 분석하였다. 단기유가증권의 경우 처분손익과 평가손익의 주가배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투자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처분손익과 평가손익의 주가배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경우와 달리 부채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신용등급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의 경우 부채의 공정가치가 하락하여 평가차익이 발생한다.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면 기업의 실제상황과 반대되는 정보를 시장에 보내게 된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국제회계기준을 유럽연합에 도입할 때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IFRS 제39호(금융상품 회계처리기준서)의 채택을 승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Barth 등(2008)은 기업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른 부채의 공정가치 변화가 가져오는 미실현이익을 시장이 인식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들은 순자산의 공정가치, 즉 주가는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는 Merton(1974)의 아이디어에 근거하여 1986년부터 2003년까지 49,081개 기업-연 자료를 분석하여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때 부채가 많을수록 주가수익률이 덜 감소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이에 근거하여 그들은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이에 따른 미실현손익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공정가치회계의 도입으로 이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익의 변동성이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즉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익의 변동성이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Barth(2004)는 이익의 변동성을 그 성격에 따라 ① 고유의 변동성(inherent volatility) ② 추정오차(estimation errors) 및 ③ 복수의 측정척도(mixed measurement)를 사용함으로 인한 변동성으로 나누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유의 변동성이 아니라 나머지 두 가지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복수의 측정 척도를 공정가치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Hodder 등(2006)은 미국의 상업은행 202개를 조사한 결과,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익의 변동성이 포괄이익 변동성의 3배, 그리고 당기순이익 변동성의 5배에 이른다는 것을 관찰했다. 또한 공정가치 이익의 변동성이 포괄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변동성의 정보효과를 통제한 후 위험척도인 시장베타, 주가수익률 표준편차 및 장기이자율 베타 등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공정가치이익의 변동성이 시장에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금융상품의 처분을 이용한 이익조정

경영자의 자의적인 거래 선택을 통한 이익조정을 검증한 외국의 연구로는 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Wyatt(1991)와 Bartov(1993)의 연구와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Hermann 등(2003)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경영자가 자의적으로 자산처분의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이익을 조정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Wyatt(1991)는 유가증권 회계처리가 역사적 원가에 근거함으로 인해 경영자는 자의적으로 매매이익이 발생하는 유가증권만 선별하여 처분하고 매매손실이 발생하는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이익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artov(1993)는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경우 역사적 원가 회계처리에 의하여 보유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매각시점에서 처분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이를 자산

처분손익으로 일괄 인식하게 되므로 경영자는 자산의 매각시점 조정을 통해 이익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ermann 등(2003)은 일본 기업들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를 달성하기 위해 고정자산 및 시장성 유가증권의 매각시점 및 선별적 처분을 통해 이익조정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조정 전 당기이익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보다 하회(상회)하는 경우 고정자산 및 시장성 유가증권의 자산처분 이익을 실현시킴으로써 이익을 상향(하향)조정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또한 Barth *et al.*(1990)은 유가증권매매손익이 이익조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익조정 행위에 대해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이익조정은 유가증권의 선별적인 처분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로는 먼저 Lee 등(2006)이 있다. Lee 등(2006)에서는 유가증권 처분을 통해 이익조정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포괄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기보다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자본변동표에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경우 전문가인 재무분석가도 포괄손익의 존재를 파악하기 힘들고, 비전문가인 일반 투자자의 경우 자본변동표에 나타난 포괄손익보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포괄손익에 더 큰 관심을 두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관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포괄손익을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시 품질이 높은 기업일수록 포괄손익을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기보다는 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포괄손익의 재무제표 표시방법(손익계산서 표시 혹은 자본변동표 표시)과 유가증권 처분을 통한 이익조정, 공시 품질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Hunton 등(2006)은 매도가능증권 처분을 통해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손실)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목표이익을 달성하는지에 대해 실험실 연구를 하였다. 당기 예상이익이 목표이익인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에 미달(초과)하는 경우 경영자들은 당기이익을 상향조정(하향조정)하기 위하여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가능증권의 선별적 처분을 통해 이익조정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로는 실험실 연구인 Hunton 등(2006)의 연구 이외에도 Hirst와 Hopkins(1998), 감사인의 감사경험을 통해 이러한 이익조정을 검증한 Nelson 등(2003)의 연구 등이 있다.

자의적인 거래 선택을 통한 이익조정을 검증한 국내연구로 권수영 등(1998)에서는 증권회사가 보유하는 상품주식의 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상품주식의 운용이 왜곡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평가이익이 발생한 종목은 매각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한 종목은 계속 보유하는 왜곡된 상품주식 운용행태가 발견되었다.

지현미와 송인만(2009)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미 평가손익이 발생한 특정 매도가능증권을 선별적으로(cherry-picking) 처분하여 실현시킴으로써 보고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평가손익이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의 선별적 처분을 통한 이익조정은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지적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장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를 쉽게 처분함으로써 처분손익을 즉시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도 다른 이익조정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영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과 평가손익이 모두 기업 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분설명력이 있으며, 특히 처분손익 회귀계수가 평가손익 회귀계수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은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으로 보고이익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익조정은 만기 보유증권의 처분이나 유·무형자산 및 리스자산의 처분을 통한 이익조정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IV. 최근의 금융위기와 공정가치 평가

금융위기로 인하여 회계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특히 최근에 확대하기 시작한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비판은 대개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된다.

- ① 시가평가제도, 특히 금융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시키는 mark-to-market(MTM) 회계는 자산버블을 초래하고 그 버블이 터졌을 때 부정적인 담보부족이라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이로 인해 기업은 자산을 비자발적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자산의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 ② 적절한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당시의 시가를 적절한 공정가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이 비활성적이라면 이러한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가 공정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가 추정치를 사용했다면 여기에 경영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MTM회계의 문제점을 법적 측면에서 접근한 Epstein & Henderson(2009)의 연구에 따르면, 자산가치의 버블이 붕괴될 때 담보가액이 부족하게 되어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은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에는 실제로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부실화되거나 규제기관이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해 기업의 미래가 밝아서

당사자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도 현행의 MTM회계에 따를 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으면 이는 자산의 비자발적인 매도를 초래해 자산의 가격을 더욱 하락하게 만든다. 만일 당사자가 참고 기다렸는데 미래가치를 잘못 판단하였다면 당해 기업의 투자자들은 그들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미래의 가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송위험이 커지고 이에 더하여 법원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은 불필요하게 높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MTM회계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 이를 더욱 부채질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문적인 측면에서 금융기관들이 공정가치 회계를 도입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점들을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즉 이러한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서 공정가치회계를 확대 적용함에 있어서 특히 경기침체에 또는 해당 자산의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Plantin 등(2008)과 Allen과 Carletti(2008)은 게임이론 모형을 이용한 연역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Plantin 등(2008)은 현실적으로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특정 자산(① 내용연수가 장기인 비유동자산, ② 해당 자산에 대한 시장이 충분히 유동적이지 않은 경우 및 ③ 취득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산)의 경우 공정가치 측정이 역사적원가에 의한 측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공정가치는 객관적인 활성시장에서 관찰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투입변수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추정하는 경우 인위적인 위험(artificial risk)이 수반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Allen과 Carletti(2008)는 Plantin 등(2008)이 제시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공정가치 회계가 적절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즉 시장의 유동성이 극도로 저하되는 경기침체기에는 자산의 시장가격이 자산의 잠재적 현금창출

능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재무적 곤경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시장가격에 거품이 형성된 시기에도 공정가치 평가는 유사한 재무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 부동산 가격버블이 꺼지면서 2008년 이래로 겪었던 금융위기가 바로 이 경우이다. 즉 과도한 경기침체나 과도한 경기활황 시기에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된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적절한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외에도 Landsman(2008)은 금융기관에서 공정가치회계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금융기관이 이익과 자본을 조정할 의도로 공정가치 측정의 투입자료를 기회주의적으로 조정하지 않도록 공정가치 추정에 이용된 자료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공정가치 측정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정가치의 측정오차가 줄어들수록 공정가치 정보는 투자자나 채권의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금융기관의 경영자 입장에서도 경제적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원배분을 선택할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정가치 회계의 확대는 특정 국가의 자본시장 발전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 간의 자본시장 시스템의 발전 정도는 재무보고와 은행규제를 위한 공정가치 사용의 효과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Demski 등(2008)도 자산평가의 세 가지 방법인 ① 역사적 원가 ② 저가법 또는 자산손상회계, 및 ③ 공정가치가 어떠한 조건에서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면서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최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그들은 자산평가를 위한 규제 특성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면적인 공정가치회계의 적용은 오직 공정가치 측정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최적의 선택이다. 둘째, 현실적인 상황인 공정가치의 측정과 공시에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저가법 및 자산손상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선택이다. 셋째, 공정가치의 선택적 적용에 드는 비용이 공정가치의 의무적 적용에 드는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공정가치의 선택적 적용에 드는 비용이 감소할수록 공정가치의 의무적 적용을 늘이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최적의 선택이다. 넷째, 공정가치의 선택적 적용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정가치를 의무적인 적용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의무적 적용과 선택적 적용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인 연구 이외에도 금융위기로 초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많은 추가적인 연구보고서가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말에 IASB와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Board)에서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를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① 공정가치 평가의 원칙은 유지하되 극단적인 상황(예를 들면, 파산, 유동성 위축 등)에서 형성된 가격은 시가적용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 ② 시가평가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시키던 금융상품을 단기간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평가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다른 범주(예를 들면, 매도가능유가증권이나 만기보유유가증권)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FASB의 경우, 활성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자산의 공정가치를 의미하지만 비활성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

니다. 따라서 공정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가의 특성(예를 들면, 거래가격이 명시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시장근거가 없는 경우 경영자의 가정, 즉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와 적절한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한 경영자의 추정치를 공정가치의 측정치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비활성시장 및 비자발적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정시가를 사용하거나 시가평가를 배제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함.
- 일시적이 아닌 시가하락 시에 채권의 감액손실에 대한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신용하락에 의한 감액손실은 당기손실로 처리하되 기타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함.
- 중간재무제표에서도 공정가치 측정 관련된 주석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요구함.

특히 미국의회 의원 60여명은 금융회사들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가치 회계기준 적용의 중단 또는 개정을 SEC(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MTM회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SEC는 연구보고서(2008.12)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SEC는 지속하여 MTM회계를 지지하고 있다. 즉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MTM회계가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MTM회계의 중지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들의 결론에 의하면, MTM회계가 2007년에 발생한 금융기관 실패, 나아가서는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 된 것 같지 않다고 본다. 금융기관의 실패는 발생 가능한 신용손실의 증가, 자산 질에 대한 우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확신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MTM회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① 비유동-비활성시장에서 목적적합한 시장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추가적인 기준과 수단의 개발이 요구된다. 즉 회사와 감사인을 도울 수 있는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 ② 재무제표에 공정가치의 효과와 관련된 현행 공시 및 표현 요구를 증대시켜야 한다.
- ③ 공정가치회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공정가치 추정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 판단의 필요를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교육적 노력도 포함한다.
- ④ 공정가치측정에 있어서 시장유동성의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즉 추가 적용 및 공시 기준이 필요한지를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⑤ 부채평가의 경우 신용위험을 반영했을 때 투자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이 때 먼저 현재의 부채 평가정보가 충분히 투명하게 제공되는지를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손상회계모형을 그 대안의 축소까지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재평가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회계기준을 따를 때 손상정보가 산출되고, 인식되고 보고되는 기준이 자산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자산손상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권고하고 있다.

- 손상을 결정하고 보고하는 데 사용하는 모형의 개수를 축소하여야 한다.
-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이 추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 시가가 회복되었을 때 가치증가로 기록하는 한도가 적정한지 검토한다.

한편, Brunnermeier 등(2009.1)은 금융위기에서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 그리고 자산의

분류를 변경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MTM회계에 대한 대안으로 mark-to-funding(MTF)을 제안하고 있다. MTF의 핵심은, 자산은 보유자의 의도나 시장의 단기적 변화가 아니라 자산보유자의 능력에 따라 평가·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자산보유자의 능력은 자산금융의 만기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은행이 20년간 사용할 자산을 1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으로 사들였다면 자산의 보유 의도에 관계없이 자산을 1년 후(차입금 만기시점)의 기대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경우 1년 이내의 일시적 가격변동을 무시하게 된다. 여기에서 제안한 MTF로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 금융위기에서는 자본조달이 더욱 단기화되므로 경기순응성 문제가 상존한다.
- MTF를 허용하면 금융기관이 자산을 자의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추가적으로 정보비대칭을 유도할 것이고, 이로 인해 미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기관이 두 재무상태표에 하나는 MTF에 근거하고, 다른 하나는 MTF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MTF의 다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금비용(capital charges)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자산과 관련된 자금조달 조합의 위험성에 대해 별도의 자본을 적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금융위기에 따라 회계기준 및 그 운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IASB와 FASB는 공동으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재무보고의 효과와 그 한계에 대한 보고서(2009.7)”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효과적인 재무보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효과적인 재무보고〉

- ① 기업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해 편의 없고, 투명하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높은 질의 회계기준과 이의 일관성이 있는 적용, 그리고 철저한 감사와 관련 기준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
- ③ 투자자 및 기타 금융시장참여자, 그리고 규제기관 및 기타 이용자들의 자원 배분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 ④ 이들 이용자들의 재무보고 투명성과 완전성에 대한 신뢰는 국제금융안정과 건전한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 ⑤ 규제목적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과 다르다면,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완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차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금융위기와 연관시켜 볼 때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특별히 지목하고 있다.

- 회계기준이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 위기는 회계기준과 그 적용에 있어서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취약점은 주로 ① 비활성시장에서 공정가치회계(MTM회계 등)의 적용상 어려움, ② 대여금, 금융상품 등에 관련된 손실인식의 지연, ③ 부외부채 및 ④ 금융상품 회계기준(자산손상 기준 포함)의 복잡성에 있다.
- 특히 금융위기 초기에는 공정가치 회계가 금융위기를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즉 자산가치의 하락은 회계상 하향조정을, 하향조정은 자본적정성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자산의 강제매각을 유도하고, 강제매각은 다시 자산가치의 하락을 확대시킨다.
- 공정가치 평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MTM회계가 시장의 등락을 보여주지만 위와 같은 경기순환 사이클을 증폭시키지는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MTM

회계는 증대된 자산가치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반영함으로써 조기경보(early warning) 신호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MTM회계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보다 시기적절하게 인식하고 위기를 해소하는 데 공헌한다.

- 오히려 많은 자산에 MTM회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내재된 손실이 인식되지 않게 된다.
- 그러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MTM회계 기준의 개선은 금융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금융안정과 건전한 경제성장에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 금융상품의 측정에서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이 혼재되어 있어 다소 복잡하지만 개념상 그리고 실무상 이유에서 단순히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차이를 손익에 반영시키는 것보다 조금 단순화된 복합(mixed) 모형이 바람직하다.
- 현행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련된 회계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재무보고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재무보고의 한계〉

- ① 비록 효과적 재무보고가 시장에 필수적인 활력과 투명성을 제공하지만, 정보이용자들은 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 ② 모든 정보이용자들은 재무보고의 한계를 인지해야 한다.
 - 재무보고는 단지 경제성과에 대한 단면만 제공하는 것이지 거시경제 발전의 효과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 재무보고는 시장에서 산출되는 자료의 신뢰성, 그리고 자산과 부채에 대한 보고기업의 적절한 가격결정에 의존한다.

이러한 재무보고의 한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 특히 혼란기에 재무보고는 생산 즉시 구식화된다. 따라서 자원배분 의사 결정에 이용하기 위해서 정보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나타난 수치뿐만 아니라 성과추이, 산업자료, 미인식된 무형자산, 위험요소 및 경영과 지배구조의 전략과 질 등에 관한 다른 목적적합한 비계량 및 계량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 재무보고가 각 금융기관의 재무한정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규제기관은 재무보고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규제대상기관으로부터 직접 어떤 필요한 자료라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 또한 특정 회계기준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의 커다란 효과를 적시에 회계처리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 재무보고의 질은 재무보고 작성자들이 사용하는 기초자료의 질에 의해 결정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산 및 부채 공정가치에 관한 정보는 많은 경우에 적시에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시장시스템에 의존한다. 그러나 거래시장이 아닌, 특히 비구조화 상품에 대한 시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시스템을 강화해서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 기초자료의 질은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업실체들이 가격과 다른 평가정보를 적절히 확인했는가에 달려 있다. 금융위기를 통해 위험관리의 실패와 더불어 이러한 확인과정이 취약했고, 독립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음이 노출되었다. 금융기관(투자자를 포함)은 그들의 책임을 지나치게 외부에 의존하여서는 안 되고, 가능하다면 가치의 검증을 판매, 거래 및 기타 상업적 기능과 분리시켜야만 한다.

여기에서 은행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관련 감독기관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8년 11월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은행의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방식에 대한 감독기준”을 살펴보자. 동 기준에서 제시한 원칙은 은행의 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요구사항과 은행의 가치평가방식에 대한 감독당국의 평가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의 혼란을 고려할 때 더 광범위한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와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통제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가증권 공정가치 회계를 적절히 도입하기 위해 동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 리스크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을 위하여 금융기관 이사회 및 최고 경영진이 금융상품의 가치평가에 대한 관리구조와 통제프로세스를 적절히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동 프로세스는 금융기관 전체 및 통합된 리스크측정 및 관리프로세스에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원칙 2 :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기간 동안에도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가치평가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원칙 3 :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진은 재무제표상의 금융상품 분류 정책이 회계 또는 감독 목적상의 금융상품 관리 및 금융기관의 가치평가 능력과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원칙 4 : 금융기관은 가치평가를 위하여 적용하는 방법론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건전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원칙 5 : 금융기관은 관련성 있고 신뢰성 있는 입력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여타 중요한 정보를 통합하여 공정가치 측정을 가능한 한 신뢰할 만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 6 : 금융기관은 리스크관리, 감독 그리고 재무보고 목적으로 가치평가조정(valuation adjustment)을 결정하는 엄격하고 일관성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원칙 7 : 금융기관은 가치평가의 불확실성을 명확히 평가하는 가치평가 및 리스크관리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최고 경영진 및 이사회에 제공되는 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칙 8 : 금융기관의 외부보고서는 적시성, 관련성 및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원칙 9 : 금융기관은 가치평가 및 관리 절차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원칙 10 :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관리, 리스크관리 및 통제기준이 포함된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 동 평가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V. IASB의 금융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후속 조치

1. 현행 IASB의 프로젝트

금융위기로 회계시스템, 특히 금융상품의 공정가치회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IASB와 미국의 FASB에서는 관련 회계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표 4〉 참조). 2009년 11월에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기준이 공표되었으며, 나머지는 2010년과 2011년에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표 4〉 금융상품 관련 국제회계기준 개선 프로젝트

1.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 : 완성됨 (2009.11)
	금융부채 : 2010 하반기 예정(공개초안 발표)
2. 손 상	2010년 하반기 예정(공개초안 발표)
3. 위험회피회계	2011년 1분기 예정(공개초안 발표)

주 : 1) “공정가치 측정” 및 “금융자산의 제거”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이와 별도로 진척되고 있다.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금융상품의 회계기준에 대한 공동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에서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평가, 손상차손의 인식 및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포괄적인 공개초안을 발표(2010년 6월)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기에서 FASB는 기본적으로 공정가치 모형을 따르고 있어 아직도 혼합모형을 따르고 있는 IFRS(국제회계기준)와는 다소 상이하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적은 크게 ① 재무보고 정보의 유용성은 증대시키면서 ② 회계처리상의 복잡성을 감소시켜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③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 부외부채를 제거하려는 데 있다.

모든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금융상품의 분류, 손상차손, 내재파생상품의 식별, 그리고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등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표 5〉 참조).

〈표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 회계처리

<p>[관련 회계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의 분류 ○ 손상차손 ○ 내재파생상품의 식별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p>[공정가치평가의 도입효과]</p> <p>필요가 없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p>계속 필요함.</p>

그러나 금융상품에 공정가치회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문제 1 : 금융상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문제 2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서 발생하는 평가차손을 어디에 반영할 것인가?

문제 3 : 공정가치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문제 4 :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며, 이를 어떻게 공시하여야 하는가?

2. 공정가치회계의 우려와 지지

금융상품에 공정가치회계를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우려와 지지가 있다. 먼저 우려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공정가치 정보가 모든 경우에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을 취득하여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여기에서 창출되는 미래현금흐름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다. 한편,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공정가치의 변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라는 것이다. 공정가치는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당해 금융상품을 만기까지 절대로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타당하다. 둘째,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차액은 실제로 실현되지도 않을 수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면 기업의 성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분명하지 않다. 즉 기타포괄손익이 당기손익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당기손익을 결정하는 요인과는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요소로 판단할 것인지 정보이용자가 혼란스러워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공정가치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만일 지나치게 경영자의 판단에 의존한다면 산출되는 정보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칫하면 경영자의 이익관리나 이익조정 동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부채의 측정에서 당해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 오히려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하락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을 가능한 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를 지지하는 주장을 살펴보자. 첫째로 금융상품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평가했다면 취득 이후에도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취득시점에 따라 동일한 금융

상품이 다르게 평가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 공정가치 정보가 기업의 영업성과 나아가서는 금융상품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한 경영자의 업적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즉 미실현이익의 발생 여부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당해 미실현이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손익계산서를 확장하여 기타포괄손익을 포함시킨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의 추세는 금융상품의 경우 당해 금융자산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다른 실현된 손익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금융상품의 손상차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금융자산의 인식 및 회계처리

1) 금융상품의 정의

2009년에 개정된 K-IFRS(K-IFRS 제1109호)에서는 금융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쪽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면서 다른 거래당사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계약”

이는 매우 광범위한 정의로서, 이에 따라 금융상품에는 여러 가지 자산, 부채 및 지분상품이 포함된다(〈표 6〉 참조).

금융상품은 양면성을 가지는데 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금융자산(권리)을 발생시키고, 다른 거래당사자에게는 금융부채(의무) 또는 지분상품(자본)을 발생시킨다. 또한 금융자산은 금융상품보유자 입장에서 정의가 되며,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은 금융상품발행자의 입장에서 정의되고 있다.

금융상품은 특히 계약상(contractual)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아닌 법적(statutory)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하는 미지급 법인세 및 환급금 또는 의제(constructive)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하는 충당부채 등은 금융상품이 될 수 없다.

〈표 6〉 금융상품의 종류

금융자산	금융부채
(1) 현금	
(2) 다른 실체의 지분상품(주식)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①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수취채권 등) ②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①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지급채무 등) ②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4) 자기지분상품(자기회사의 주식)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①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가변적인 비파생상품 ②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4) 자기지분상품(자기회사의 주식)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①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가변적인 비파생상품 ②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금융상품이란 일반적으로 화폐액으로 주거나 받을 금액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기로 하거나, 비화폐성 항목을 주거나 받기로 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선급금은 미래에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이 될 수 없다.¹⁾

금융상품은 본원(primary)금융상품과 파생(derivative)금융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원금융상품은 현금, 수취채권, 지급채무 및 지분상품을 의미하며, 파생 금융상품으로는 선물 및 선도상품(futures and forwards), 스왑(swaps) 등이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본원금융상품에 내포된 고유위험을 계약당사자간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갖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파생금융상품의 시작시점에 권리를 가진 계약당사자는 본원금융상품에 내포된 고유위험을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전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의무를 가진 계약당사자는 해당 고유위험을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부담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계약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바뀌게 된다. 이 경우 파생상품이 유리한 교환조건을 가지면 금융자산으로, 불리한 교환조건을 가지면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풋옵션(매도선택권) 또는 콜옵션(매입선택권)의 경우 권리보유자와 의무부담자는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기록해야 한다.

1) 일부 자산과 부채가 외관상으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처럼 보이더라도 금융상품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 K-IFRS 제1027호(연결및별도채무제표), K-IFRS 제1028호(관계회사투자), K-IFRS 제1031호(조인트벤처지분), K-IFRS 제1104호(보험계약) 및 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한편, 계약의 결제금액이 기초상품에 근거하여 결정되지만 기초상품의 인도 및 인수를 수반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회사채의 원금을 회사채의 만기시점에 있어서 일정 수량의 원유가격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결제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계약은 금융상품으로 취급한다.

2)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목적에 따른 분류

모든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평가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가 있다(〈표 7〉 참조).

〈표 7〉 금융상품의 분류 및 회계처리

최초측정	사 후 측 정 ⁴⁾		
FV ¹⁾	상각후 원가측정 금융자산 ²⁾	다음 조건은 모두 충족 ①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회수가 목적임. ② 계약상 현금흐름(원금+이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원칙〉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 (이익잉여금에 마감)
		〈예외〉 기타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마감) ³⁾

- 주 :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함.
 2) 익일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음.
 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recycling)는 허용되지 않음.
 4) 미국 FASB에서는 모든 금융자산을 FV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예외 1〉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모형과 ②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사업모형(business model)이란 금융자산을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사업모형은 개별

자산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한 회사가 복수의 사업모형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분류를 개별 보고실체의 입장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실체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일부 투자포트폴리오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기 위하여 보유할 수도 있고, 일부는 공정가치변동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 또한, 회사의 사업모형이 계약상의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것이더라도 일부 금융자산은 판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 금융자산의 판매가 사업모형을 변형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일부 금융자산의 신용등급이 회사가 정한 수준 이하로 하락하여 처분한 것은 사업모형을 변형시키는 판매로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판매가 자주 발생한다면 회사의 사업모형 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라는 사업모형에 합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계약상 현금흐름(contractual cash flow) 특징이란 금융자산이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이자(interest)는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와 원금과 관련된 신용위험(credit risk)에 대한 대가로 본다. 예컨대 매출채권이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는 미래 정해진 날에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는 이들로부터 나오는 계약상의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모형만 충족된다면 이들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예외 2〉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차액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는 지분상품

K-IFRS에서는 또 단기보유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시의 취소불능선택(irrevocable election)에 의하여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지분상품에 대해서만 이런 선택이 가능

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상각후원가측정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이더라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공정가치선택권(fair value option)이라고 한다.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at initial recognition)에 공정가치로 금융자산을 평가한다는 것을 지정해야 한다. 이는 오직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중요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에서 회계불일치(accounting mismatch)란 공정가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자산 또는 부채 및 손익이 다른 기준으로 측정 또는 인식되어 관련되는 항목들 간에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한 회사가 고정수익률 채권을 취득하면서 고정수익률 회사채를 발행하였다고 하자. 이 두 관련 자산과 부채는 이자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손익이 서로 상쇄될 것이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모두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함으로써 회계불일치 현상을 제거시킬 수 있다.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을 운영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금융자산에 대한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모형의 변경은 최고경영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외적 또는 내적 변화의 결과로 이루어지며, 회사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3)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fair value)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과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transaction costs)를 공정가치에 가산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에서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발생하는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최초측정 이후에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회계기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 변화에서 발생한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 또는 기타포괄손익(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 반영한다.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0 이하로 하락하면 이는 금융부채로 취급해야 한다.

4. 손상차손의 인식

1) 손상차손 대상 금융상품 및 손상의 징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자산은 이미 손상의 효과가 당기손익(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 반영되어 있거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손상차손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손상차손(대손상각) 대상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국한된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기 때문에 손상차손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는 대여금, 투자채무증권, 매출채권, 기타수취채권 등이 있다.

손상차손의 대상이 되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대해서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금융자산의 손상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은 손상의 객관적 증거를 나타내는 징후들의 예시이다.

- ①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
- ②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④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재무구조조정 가능성 높아짐.
-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⑥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자료(차입자의 지급능력 약화, 담보자산의 가격하락 등)가 관찰됨.

앞에서 열거한 이유 외에도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이 손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들로서는 예컨대 지분상품 발행자의 영업환경에 중대한 기술적, 시장적, 경제적 또는 법적으로 불리한 변화가 일어나서 투자금액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가 오랫동안 원가를 많이 하회하는 것도 손상의 증거가 될 수 있다.

2) 손상회계처리

손상차손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모형에는 발생손실모형과 기대손실모형이 있다.

가. 발생손실모형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은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이를 손상차손 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래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인식할 수 없다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이미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때문에 적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또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으므로써 실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과대평가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과소 계상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발생손실모형에서는 금융자산집합에 속한 일부 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그 집합에 속한 다른 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손상이 발생한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인식해야 한다. 즉, 손상차손은 포트폴리오 기준 또는 총계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자산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기대손실모형

기대손실모형(expected loss model)은 금융자산으로부터 수익이 기대되는 시기에 걸쳐 기대되는 신용손실을 배분하여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금융자산을 적절히 평가하고, 금융자산이 존재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을 인식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발생손실법에 비하여 주관적이고 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기대손실률의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방법은 IASB가 2009년 11월에 발표한 공개초안에서 발생손실모형을 대체할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모형 이외에도 동적비용반영모형(dynamic provisioning model)이라는 것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는 경기가 좋을 때에는 손상차손을 많이 반영하였다가 경기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이미 적립하여 놓은 손상차손을 환입한다거나 손상차손을 적게 인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손상차손의 반영을 통하여 성과를 유연화하자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규제목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²⁾ 이 방법은 정책적 수단으로는 적합

2) 이 방법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G-20 경제위기 대책회의에서 제안되기도 했었던 방법이다.

할지 모르지만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무보고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본다.

K-IFRS에서는 발생손실모형을 채택하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당해 자산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objective evidence)가 있으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자산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최초인식시점에 사용한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현행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할 경우 해당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계산할 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이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발생손실모형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과대평가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과소 계상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발생손실모형 대신에 기대손실모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이미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하였고, 이를 2010년도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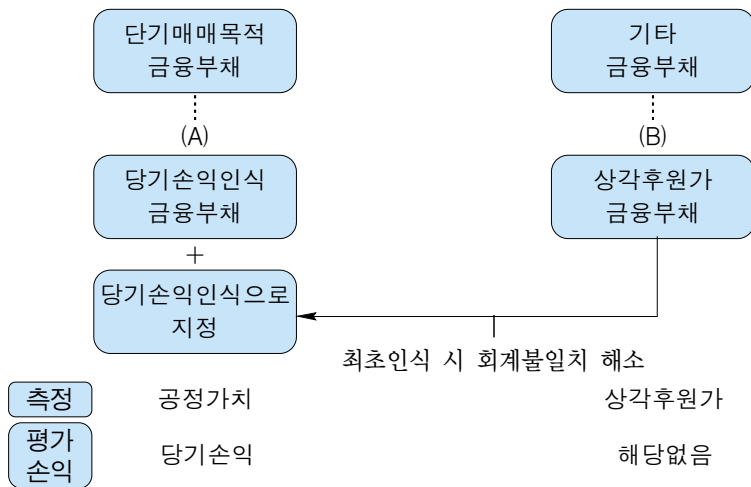
5.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단기매매목적의 금융부채(A)를 제외하고 기타의 모든 금융부채(B)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그림 1〉 참조). 그러나 상각후원가금융부채라도 기업이 최초 발생시점에 선택하면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그리고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

〈그림 1〉 금융부채의 회계처리



여기에서 공정가치란 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상각후원가(amortized cost)란 최초인식금액에서 원금상환금액을 차감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반영한 할증액 또는 할인액의 누적상각액을 가감하고, 손상차손 또는 대손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발행기업의 신용위험 하락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하락은 발행기업에 이익을 초래한다. 이는 개념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IASB에서는 공정가치선택권의 행사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금융부채에 관련된 신용위험하락으로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2010년 6월의 공개초안).

6. 공정가치 측정

K-IFRS 내에서 통일되지 않은 공정가치 측정지침을 향상시켜 단일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9년 5월에 공개초안이 발표되었으며, 최종 기준은 2010년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공개초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가치 측정지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공정가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와 공시 요구 사항을 제시함.
- 비활성시장 하에서 어떻게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그러나 공정가치가 현행 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만 다를 뿐 새로운 공정가치측정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1) 공정가치의 정의

먼저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 시점에 “시장참여자”간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의 매도로 수취하거나 부채의 이전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Fair value is the price that would be received to sell an asset or paid to transfer a liability in an orderly transaction between market participants at the measurement date)

이러한 공정가치는 기업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자산 혹은 부채가 주로 측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정가치의 정의가 자산과 부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환가격(exchange price)임.
- 교환거래는 가상적(hypothetical)이며 정상적(orderly)³⁾임.
- 자산 혹은 부채의 유출가격(exit price)임 :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측정일 시점의 자산 혹은 부채와 관련된 미래 현금유입과 유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함.

이러한 개념을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공정가치는 자산 혹은 부채의 특성(예를 들면, 자산 혹은 부채의 상태(condition)나 위치(location))을 고려해야 함. 그러나 자산을 매도하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은 자산의 특성이나, 제3자에게 부채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의 기업 능력의 제한은 부채의 특성이 아님.
- Blockage factor는 고려하지 않음. 즉, 대량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매도에 대한 비유동성 조정 없음.
- 거래원가는 자산이나 부채의 속성이 아니라 거래의 속성임. 따라서 공정가치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함.
- 운송비용은 자산 혹은 부채의 특성(location)을 변화시키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됨. 따라서 위치가 자산 혹은 부채의 특성인 경우 자산의 공정가치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가격에서 운송비용을 차감함.

공정가치 정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래라는 개념과 시장참여자라는 개념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3) 정상거래(orderly transaction)

- ① 거래를 할 의사가 있고
- ② 측정일 시점에 자산 혹은 부채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가격에 거래를 하기 위하여 정보를 알리고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 시장에 충분한 노출을 허용하는 시장참여자를 수반
- ③ not a forced transaction(매도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며 시장가격에 매도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자산 혹은 부채를 매매할 것이 강요되지 않으며 매도하거나 이전할 자산 혹은 부채에 대해 마케팅할 충분한 시간이 있음).

가. 거래(transaction)

-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는 측정일 시점의 가상의 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에 대한 의무가 있는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고려됨(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특유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 측정일 시점에 기업이 거래에 참여할 의도가 있어야 하거나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음.
- 자산의 매도 혹은 부채의 이전은 자산 혹은 부채의 주요 시장에서 일어나며 주요 시장이 없을 경우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시장을 의미한다.
 - 거래원거나 운송비용을 고려했을 때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최소화하고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는 금액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장
 - '시장'은 그 존재 여부가 관측가능할 필요가 없으며 자산 혹은 부채에 대해 체계화된 거래가 있을 필요도 없음.
 - 기업은 가장 유리한 시장을 식별할 때 모든 가능한 시장을 찾을 필요는 없음. 기업이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은 가장 유리한 시장인 것으로 간주됨. 더 유리한 시장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음. 주된시장은 기업이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한다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활동 규모가 가장 큰 시장임. 주된시장은 가장 유리한 시장이며 기업이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추론함.
 - 관측가능한 시장이 없다면 기업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의 시장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

나. 시장참여자(market participant)

여기에서 언급하는 시장참여자는 정상거래에서 합리적이고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가 자산 혹은 부채에 대하여 허용 가능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용하는 가정을 사용함.
- 시장참여자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가장 유리한 시장의 매수자 또는 매도자임.
- 보고실체와 독립적임. 즉 특수관계자가 아님.
-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거래에 대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와 일상적인 실사 노력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력과 이해력이 있음.
- 정보의 비대칭성은 반영하지 않음.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의사가 있음. 즉 동기 부여되어 있으나 강제되지 않음.

2)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이와 같은 공정가치 측정을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적용하여 보자.

가.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먼저 자산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highest and best use)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 비금융자산의 가치평가 시 사용되는 가치평가 개념. 자산의 하나 이상의 다른 가능한 사용이 있을 때 적용되는 개념임.

- 자산의 공정가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반영해야 함. 시장참여자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은 그 자산이 사용되는 자산이나 자산 집합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임. 이는 측정일에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하며 법적으로 허용되며 재무적으로 실행가능해야 하는 자산의 사용을 고려함.
- 금융자산의 다른 가능한 사용(alternative use)은 없으며 금융자산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은 현재의 사용임.
-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은 현재의 사용과 같음.
- 기업은 사업결합시 취득하게 되는 방어적 자산인 무형자산 등에 대하여 다른 시장참여자에 의해 그 자산이 사용되는 것을 간주하여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인식함.
-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되는 자산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이 그 자산의 현재의 사용과 다른 경우 기업은 자산 집합의 공정가치를 요소별로 나눌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현재 사용자(보고실체)가 특정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과 시장참여자가 판단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음. 이 경우 시장참여자 관점의 공정가치(A)는 현재 사용자(보고실체)의 사용방법을 전제로 하여 추정된 가치(B)와 'A-B'로 분할될 수 있음.

또한 자산의 경우에 적용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의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두 가지 가치평가의 전제(premise)가 있을 수 있다.

- 사용가치 전제(in-use valuation premise) : 자산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이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집합으로서 이용하는 것인 경우 적용되는 전제

- 유출가격은 그 자산을 이용함으로써 현금유입액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자산과 부채(보충적인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거나 구입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매도가격임.
- 교환가치 전제(in-exchange valuation premise) : 자산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이 그 자체로 이용하는 것일 경우 적용되는 전제. 즉 매도는 자산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시장참여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전제

나.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측정의 개념을 부채에 적용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게 된다.

- 부채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됨.
- 부채와 관련된 미이행위험은 부채의 이전으로 달라지지 않음(이전의 전과 후가 동일).

<가정 1> 이전

- 공정가치 측정은 시장과 비교했을 때 기업이 부채를 이행하거나 결제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시장의 기준(market benchmark)을 제공함. 기업의 내부 자원으로 부채를 결제하는 데 있어 상대적 효율성은 결제과정이나 혹은 그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나타남.
- 부채의 결제금액이나 부채의 이전 금액은 'risk margin'과 'profit margin'을 모두 고려하므로 동일함.
- 부채를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은 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참여자가 부채를 부담하며 요구하는 금액을 고려할 때 가정하는 것에 근거하여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함.

-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함.
 - 의무를 이행하거나 결제하기 위해 지급할 현금유출액에 대해 명시적이며 편견 없는(이미 결정된 값이나 특정 결과를 유도하지 않도록) 현행의 추정치
 - 추정된 미래 현금유출액에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위한 현행 할인율
 - risk margin과 profit margin에 대한 명확하고 편견 없는 추정
- 가상의 이전 거래에서 부채를 부담하면서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업은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부채를 이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사용될 자산의 금액과 다르지 않음. 따라서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산 보유자의 관점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참고하여 측정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될 자산의 공정가치를 참조하여 측정할 수 있음.

〈가정 2〉 미이행위험과 신용수준

- 미이행위험은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을 포함함. 특정 부채의 미이행위험은 부채의 특성임.
 - 미이행위험은 최초 혹은 후속 기간의 측정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 부채의 측정 시점에 미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임.
- 기업의 신용수준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측정은 공정가치의 측정이 아님.

3)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fair value at initial recognition)⁴⁾

거래가격은 최초 인식할 때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특수관계자간 거래
- 거래가 강제로 이루어지거나 매도자가 거래에서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된 경우
- 거래가격에 의해 나타나는 회계단위가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 단위와 다른 경우
-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보고실체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과 다른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될 것이다. 이연된 손익은 별도의 항목이며, 공정가치의 일부가 아니다.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면, 기업은 1일 손익(day 1 gain/loss)을 인식한다. 최초 공정가치의 측정이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4) 가치평가기법(valuation techniques)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간의 정상거래가 일어날 경우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는 시장접근법,

-
- 4)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자산 혹은 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손익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정상거래에서 자산/부채를 획득하는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은 적절한 정보가 되지 못함.
 - 1일 손익(day 1 gains/losses)의 인식을 정당화할 만큼 항상 충분히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것은 아님(특히 Level 3의 경우).

수익접근법 또는 원가접근법 등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또는 원가접근법과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원가접근법은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적절한 평가 수단임.
- 시장참여자가 고려하는 위험(model risk, input risk 등)을 반영하여 조정함.
- 관련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함.

5) 공정가치 서열체계(fair value hierachy)

K-IFRS는 모든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되는 일관된 측정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잡성을 줄이고 비교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일의 측정체계를 소개하고 있다.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유의적인 최하위의 투입변수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그림 2> 참조).

Level 1 : 측정일에 보고실체가 접근가능한 동일 자산 혹은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에 대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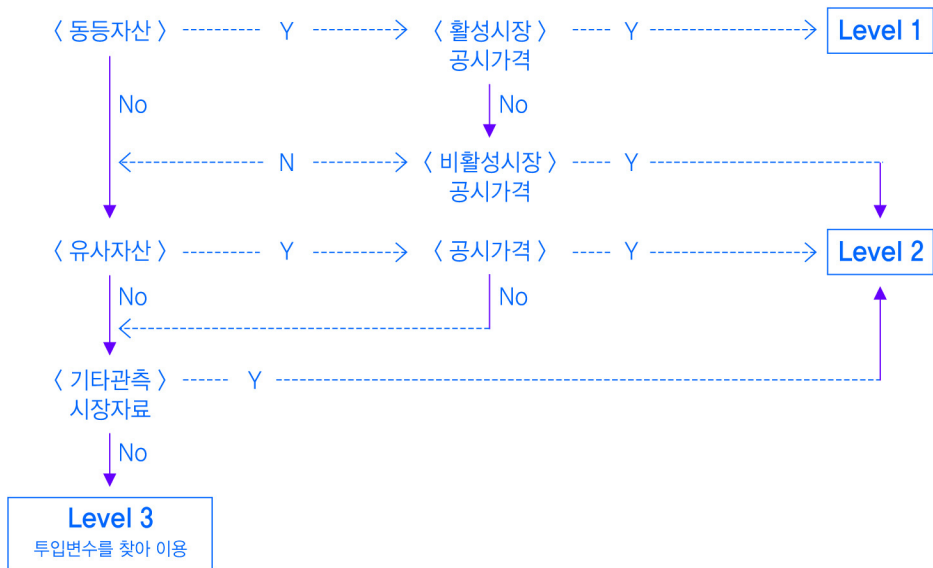
* 여기에서 활성시장이란 지속적으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우 빈번하고 규모 있게 거래가 발생하는 시장을 말함.

Level 2 : 시장에서 직접 관측가능하지는 않지만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에 근거하거나 뒷받침되는 시장과 연계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함.

Level 3 :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에 근거를 두지 않는 자산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함.

* 여기에서 사용되는 투입변수가 보고실체의 추정에 근거하더라도 시장참여자가 고려하는 다른 가정들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함.

〈그림 2〉 공정가치서열체계의 적용



매도-매입 호가에 근거한 투입변수를 살펴보자. 현행의 IFRS에는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가치평가방법에 매입매도 스프레드를 어떻게 적용할지 지침이 없다. 각각 다른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은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의 다른 지점에서 거래를 한다. 즉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 가격은 그러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서 가장 적절하므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 공정가치 측정치로서 중간가격에 의한 가격결정이나 다른 실용적인 방법으로서 가격결정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음.

- 매입매도 스프레드에 대한 지침은 공정가치 측정체계의 모든 수준에 적용함.
- 매입매도 스프레드가 직간접적으로 관측되지 않은 경우 매입매도 스프레드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들일 필요는 없음.
- 롱 포지션에 대해 매입가격을 사용하고 숏 포지션에 대해 매도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 가능하지만 요구되는 것은 아님.

6) 공시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다양한 선택권이 존재하고 경영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Level 3의 경우에는 매우 애매한 경영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의 측정결과에 대한 공시도 매우 중요하다. 주요 공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정가치서열체계(Fair value hierarchy)

- 공정가치측정 시점에 이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정보는 측정치의 상대적 신뢰성을 평가하게 됨.
- 자산 혹은 부채의 개별 구분별로 각 Level의 공정가치 측정치를 구분하여 공시함.
- 공시되는 공정가치측정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공정가치 측정치는 측정치에 유의적인 가장 최하위수준의 투입변수를 근거로 그 수준을 결정함.

나. Level 3에 대한 공시

- 공정가치의 변동내용이 회계기간 동안 당기손익에 반영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함.

- Level 3 내 공정가치 측정치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조정은 회계기간 동안 당기손익에 인식된 총 손익을 포함해 모든 원천으로 인한 변동을 세분함.
-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은 경제상황의 변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총 손익에 대한 공시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주주 부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다. 기타 공시

-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 가치평가기법의 사용에 대한 정보, 특히 주요 가치평가 가정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의 민감도를 공시함.
- 가치평가기법과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 :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방법과 투입변수 및 투입변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정보를 공시함.
- 미이행위험의 변동 : 부채의 미이행위험 및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공시함. 또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의무 이행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경제적 효익 금액과의 차이를 공시함.
- 1일 손익 :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그 차이를 공시하고 그러한 차이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한 회사의 정책을 공시함. 또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상의 증거가 아니라고 결정한 이유를 공시함.
- 자산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 :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되는 자산의 가장 효과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이 기업의 현재의 사용이 아닌 경우, 현재의 사용을 가정한 자산들의 가치와 공정가치 및 사용가치의 차이 금액을 공시함.
- 인식하지는 않지만 공시되는 공정가치 : 일부 기준서에서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인식되지 않는 자산 혹은 부채의 경우에도 그 공정가치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함. 이에 따라 자산 혹은 부채의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경우 공정가치 서열체계 중 그 수준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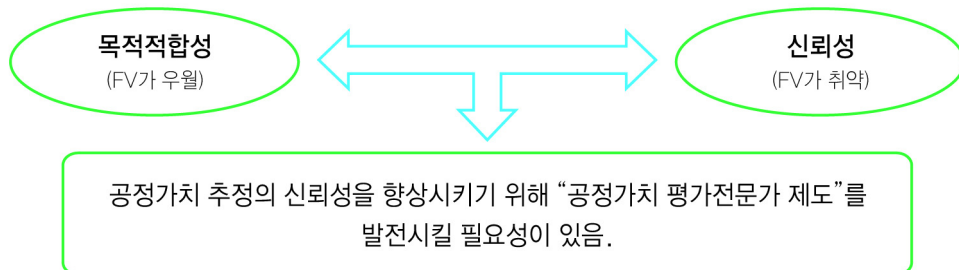
공정가치 측정지침의 마련은 공정가치의 측정 및 공시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현행 실무상 혼란이 많은 부분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7. 공정가치 평가전문가 제도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또 다른 이슈 중의 하나는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관찰할 수 없어서 외부의 공정가치 평가기관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에, 이러한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정립이다.

회계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특성이 필요한데, 이는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한 정보이어야 한다는 것과 신뢰성이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가치(fair value, FV)정보는 목적적합하지만 그 측정에서 문제가 있어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그림 3〉 참조). 이 경우 적절한 평가전문가제도는 공정가치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공정가치 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림 3〉 공정가치 평가전문가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회계법인, 채권평가회사, 혹은 감정평가법인과 같이 법률에 의해 정해진 외부평가기관이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에는 현재보다 더 빈번하게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이 필요할 것이며 외부평가기관이 공정가치 측정을 수행하는 경우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Ernst&Young 2005). 따라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외부평가기관의 선택이나 적격성 등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부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에서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K-IFRS에서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공정가치 측정에 주요 역할을 하게 될 공정가치 평가기관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 다만, 개별조항에서 독립된 평가자의 존재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⁵⁾ 현재 공정가치 평가기관은 각 국가마다 각각의 규정과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정가치 평가기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해외의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에서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를 위한 두 가지 접근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1) 선진국의 사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이름과 해당 외부평가기관이 공정가치 측정시 준거로 사용한 평가기준이 언급되었지만, 금융자산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경우는 없었다. 이는 유형자산과 투자

5) K-IFRS 제1040호 문단32에서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독립된 평가자의 가치평가에 근거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때 독립된 평가자는 공인되고 적절한 전문자격이 있으며 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과 비슷한 범주의 자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평가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위해서 대부분 외부평가기관에 의존하는 반면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시장가격을 직접 이용하거나 시장정보에 의해서 회사내부에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비금융자산(부채)과 금융자산(부채)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가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며 쉽게 검증가능하지만 비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정상시장에서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이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제3의 외부전문가에 의한 공정가치측정이 요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비금융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기관과 평가기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유럽국가에서는 외부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관리 및 감독을 법이나 정부기관의 주도하에 강제하기보다는 민간 가치평가전문기관에서 각각의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평가기관이나 평가사들로 하여금 그 평가기준을 실무지침으로 활용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미국은 1986년에 설립된 감정평가재단(Appraiser Foundation, AF)에서 평가사의 자격증에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중이며, USPAP(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와 같이 감정평가할 때 적용해야 할 평가기준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다. USPAP는 미국에서 평가사의 업무품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특정상황에서 사용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89년에 제정된 ‘금융기관개혁, 구제 및 집행법’(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FIRREA)에서는 USPAP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으로 인식하고, 개별평가자들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것을 의무화한다. 이는 법에 의해 강제된다는 점을 빼고는, 민간 가치평가전문기관에서 각각의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평가기관이나 평가사들로 하여금 그 평가기준을 실무지침으로 활용케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외에 평가사협의회(Appraiser Institute: AI) 등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자체적

으로 전문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영국에서는 왕립감정인 협회(RICS)에서 Red Books라는 평가기준서를 발간하고 전문가에 대한 자격기준 및 평가시의 활용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가치평가기준에 대한 통합 노력으로 1981년 영국의 RICS와 미국의 AIA가 합작하여 국제가치기준위원회(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Committee: IVSC)를 설립하였다.

IVSC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가치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 가치평가기준(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IVS)을 제정하였는데, 이의 활용이 증가추세에 있다. IVS에서는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평가사의 윤리규정도 마련하여 평가자의 적격성이나 독립성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IVS에서 정의내리는 평가사란, 공인교육기관에서 적절한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적절한 경험이 있어 자산평가에 유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인 공인된 방법과 기법을 이해하고 적절히 채택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공인된 국가전문평가기구의 회원이고, 평가사로서의 경력기간 동안 전문교육프로그램을 따르며 이상의 윤리규정 요구조건을 따르는 자를 의미한다.

적절한 학문적 자격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동등한 지위를 가진 정부 당국에 의해서 자격이 취득된 자를 평가자로 할 수 있다. IVS에 명시된 윤리규정에 따르면, 평가자들은 정직성과 성실성의 높은 기준을 언제나 유지해야 하며, 그들의 의뢰인, 공공의 이익, 전문인 또는 전문평가기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가치평가실무가 발전한 외국의 경우 공정가치가 필요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가치평가는 오랫동안 감정평가기관 및 평가사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며 IVS와 같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따르거나 각 국가별로 민간수준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기준 및 자격증제도에 따라 발전해 왔다.

2) 우리나라의 도입방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합병, 주식공개, 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나 법령에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규정에서는 증권회사, 신용평가기관, 회계법인 등을 적격하고 독립적인 평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이 관련 자산에 대한 평가를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다.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첫째는 미국과 유럽국가들과 같이 공정가치 평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기관 혹은 법률에서 공정가치 평가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관리·감독규정을 제정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전자를 시장제도, 후자를 규제제도라고 칭할 수 있겠다.

시장제도에서는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혹은 가치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한다. 시장제도가 작용할 수 있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즉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작성의 책임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고, 경영자는 재무제표와 관련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 독립적이고 적격한 평가기관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 또한 경영자가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거나 부적격한 평가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이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감사인의 평가와 견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규제가 없이도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적격성이 확보될 수 있다. 대신 중요한 공정가치 측정의 경우, 이를 수행한 평가기관의 이름과 평가기관이 준거로 사용한 기준, 사용한 주요 가정, 사용된 투입정보와 같은 정보를 자세하게 공시하여 감사인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

하고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시장제도의 장점은 실무적으로 경험을 쌓아온 민간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 평가기준을 따르게 함으로써 국제표준(global standards)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고, 평가기관간의 품질향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장제도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시장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고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독립성이 손상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자율에 맡겨진 공정가치 평가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공정가치 측정제도 자체의 신뢰성 역시 떨어지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 둘째, 공정가치와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선정 등에 대한 평가를 전적으로 회사와 감사인이 수행하므로, 감사인 입장에서는 감사위험 및 책임이 증가할 수 있다.

한편, 규제제도에서는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평가기관에 대한 요건 및 감독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특정 감독기관에서 이를 주관하고 감독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과 같이 책임있는 정부기구가 직원수, 명성, 내부프로세스의 적절성 등 일정기준에 의해 평가기관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일부를 적격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개별회사는 재무제표항목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정부에서 적격하다고 지정한 평가기관 중 하나에 의뢰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공정가치측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 즉 국제회계기준 적용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실무에서 공정가치 측정에 관련한 경험이 누적되어 있지 않은 초기 도입시점에서,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고, 외부평가기관이 측정한 공정가치정보에 대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한 항목의 재무제표작성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원칙적으로 독립적이고 적격한 평가기관을 선정할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외부감사

인은 이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의견을 제시한다. 정부기관이 적격한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회사에 제시하는 경우, 회사가 평가기관 선정과 관련한 자신의 책임을 정부기관에 전가시킬 수 있다. 둘째, 정부기관이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한 평가기관의 적격성이나 수행업무의 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재무제표와 관련된 공정가치 측정은 금융자산(부채)과 비금융자산(부채)에 전반적으로 매우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것이며, 일부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적용 가능한 평가기관도 회계법인, 증권회사, 채권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컨설팅법인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적격성과 독립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나 평가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업무는 매우 큰 비용과 노력이 투입될 것이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미 잠재적인 평가기관 산업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의 경우 자격이나 독립성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회계감사 업무에 대해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감리를 수행하고 있다. 증권업, 감정평가업 등 다른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정부의 규제와 감독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평가기관에 대한 적격성과 품질관리 등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규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시장제도와 규제제도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어 관점에 따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도 다를 것이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글로벌 스탠다드는 시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따른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기관별 민간단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회사가 감사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제도가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다 바람직하다. 특히 표준화와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국제회계기준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시장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합하다. 물론 이때 수행한

평가기관의 명칭과 준거기준, 주요 가정, 사용된 투입정보와 같은 정보를 자세하게 공시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이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관리와 감독제도는 국가의 법제도 및 현행 평가기관제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평가제도와와의 충돌을 완화하고, 국제회계기준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평가제도의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Ⅵ.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회계처리 설문조사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설문조사는 국내은행의 회계담당부서로부터 유가증권의 분류 및 시가평가, 대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시가평가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여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회계기준의 적절성과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시사점 등을 얻고자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1) 설문 내용

설문조사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구분하는 회계기준에 대한 의견, 유가증권의 시가평가에 대한 의견, 대손충당금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 규모 등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가증권의 분류, 유가증권 시가평가, 대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등 3부로 분류되는 15개의 5지 선다형 질문들은 1~5단계로 정도의 차이를 나누어 숫자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이 큰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다. 기타 질문으로는 유가증권의 시가평가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문항이 있었다.

2) 표본의 선정

설문에 대한 응답은 2010년 3월 5일~4월 27일 사이의 기간 동안 이메일 혹은 팩스를 통해 취합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률은 66.7%로 총 18개 국내은행 중 12개 은행이 설문에 응답(〈표 8〉 참조)하였으며, 이 가운데 1개 은행이 익명을 이용하였다. 15개의 5지선다형 질문 중 처음 14개 질문에는 회신한 12개 은행이 모두 답변하였으나 마지막 5지선다형 질문에는 10개 은행만 응답을 하였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은행의 답변은 국내은행 평균에만 반영이 되어 있다. 현황 및 의견에 대해 서술을 요구한 질문에는 대부분 응답을 하지 않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8〉 표본의 선정

	대상 은행	응답 은행	응답률
시중은행	7	4	57.1%
지방은행	6	4	66.7%
특수은행	5	3	60.0%
국내은행(시중+지방+특수)	18	12	66.7%

주 : 응답 은행 중 1개 은행이 실명을 밝히지 않아 국내은행에만 포함하였음.

3. 연구결과

1) 기술통계

2009년말 현재 국내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자산대비 비중은 2007년보다는 낮으나 2008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일반은행의 경우 오히려 2007년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두해 연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은행이

보유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의 자산대비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특수은행에서 동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서 비롯되었다(〈표 9〉 참조).

특수은행이 대출채권을 크게 늘린 데 기인하여 2009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자산 대비 대출채권 비중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어나 2007년 수준을 상회하였다.

〈표 9〉 은행의 금융상품 보유 및 관련 손익 현황

(단위 : %)

	4대은행			시중은행			국내은행 전체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자산 대비									
단기매매증권(A)	2.5	1.5	1.7	2.2	1.4	1.5	1.7	1	1.1
매도가능증권(B)	9.1	8.6	9	10.2	9.5	10.4	11.4	10.4	10.5
만기보유증권(C)	4	3.6	4.9	3.4	3.1	4.3	5.1	4.4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D)	0.4	0.5	0.5	0.4	0.5	0.5	1.2	1.1	0.6
합계(A+B+C+D)	15.9	14.1	16.1	16.1	14.5	16.7	19.4	17	17.3
대출채권	75.5	72.7	74.2	73.2	68.6	71.4	70.2	67.7	71.2
대손충당금	-1.1	-1.3	-1.3	-1	-1.2	-1.2	-1	-1.2	-1.3
당기순이익 대비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0.2	4.6	-1.6	-0.3	4.4	-0.7	-0.3	3.6	-0.4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	1.2	-3.4	4	1.1	-2	3.1	1.4	-2.5	4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37.9	-2	49.7	33.6	1.8	42.9	34	9.4	43.9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9.6	-105.5	121.2	-9.5	-84.2	95.2	-1.9	-100.9	73.5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38.4	17.5	62.3	34.2	15.7	51	34.7	21.1	50.9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3.2	1.6	0.3	3.7	1.9	0.6	2.7	1.3	1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7.2	28	8.8	6.1	20.4	6	4.2	18.3	11.1

주 : 1) 손익은 영업수익 항목의 이익에서 영업비용 항목의 손실을 차감한 값

2)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은 영업수익의 항목

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당해 연도의 변동치

일반은행, 시중은행, 4대은행으로 하위 그룹을 살펴보면, 자산대비 대출채권의 비중이 2008년보다는 높으나 2007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자산대비 대손충당금 규모는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상승하였다.

국내은행은 2007년과 2009년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및 처분이익을 경험하였으며, 2008년에는 정반대로 평가이익 및 처분손실을 경험하였다. 국내은행의 매도가능증권은 2007년과 2008년에 평가손익에서 적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손익에서 흑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평가손실 규모가 컸던 2008년에는 평가손익이 영업이익 대비 -70%였으나 처분이익은 영업이익대비 14.6%에 달하였다. 2009년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 모두 이익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매도가능증권 등 유가증권 보유 규모가 자산대비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등이 당기순이익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설문결과

국내은행을 기준으로 하여 설문결과에 나타난 특기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 ① 시가평가가 타당하다고 느끼고 있으나(Q.2.1), 시가평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Q.2.3).
- ② 생각과는 다르게(Q.2.2)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기를 원하고 있음(Q.2.4).
- ③ 예상보다는 시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음(Q.2.5).
- ④ 유가증권의 분류와 손상차손의 인식에 대한 기준에 대해 중립적으로 평가하거나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음(1.1, 2.7).
- ⑤ 부채의 시가평가는 원하지 않으나(Q.2.5) 시가평가를 한다면 평가손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⑥ 유가증권분류에서 자유재량 여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봄(Q.1.2).
- ⑦ 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은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음(Q.3.2).
- ⑧ 매도가능증권에서 상당한 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에 반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도가능증권처분에서 처분이익(당기손익에 반영)을 실현시키고 있음을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음.

〈표 10〉 설문조사 결과 요약

〈제1부〉 유가증권의 분류	평균(중위수)
1. 회계기준 명확성	3.7(4.0)
2. 자유재량 여지	2.8(2.0)
3.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원하는 정도	4.0(4.0)
〈제2부〉 유가증권 시가평가	평균(중위수)
1. 시가평가의 타당성	4.2(4.0)
2. 평가손익의 당기손익 반영 타당성	3.4(3.5)
3. 시가평가 옵션 행사	3.1(3.0)
4.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 반영 선호	3.3(3.5)
5. 시가를 구하는 어려움	3.5(4.0)
6. 부채의 시가평가 동의	2.5(2.5)
7. 손상차손 인식기준의 명확성	3.0(3.0)
〈제3부〉 대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평균(중위수)
1.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대손충당금 규모 과다 정도	3.4(3.5)
2. 대손충당금이 규제기관의 요구량에 비해 많은 정도	3.7(4.0)
3. 대출채권을 시가평가시 현재 대비 대손충당금 증가 정도	2.8(3.0)

국내은행 전체에 대한 상기의 결과를 하위 그룹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면 은행 그룹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4대 은행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구분하는 회계기준의 명확성, 유가증권 손상차손 인식 회계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여타 은행에 비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 은행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구분할 때 자유재량의 여지가 작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손상차손 및 환입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11〉 은행별 설문조사 결과

	은행별					국내은행 전체 (12)
	4대은행 (2)	시중은행 (4)	지방은행 (4)	일반은행 (8)	특수은행 (3)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 구분 회계기준 명확성	3	3.8	3.3	3.5	4	3.7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 구분시 은행 자유재량 여지	2	1.8	3.5	2.6	3.3	2.8
자의로 분류가 가능할 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원하는 정도	4.5	3.8	4.5	4.1	3.7	4
유가증권 시가평가 타당성	4.5	4.3	3.8	4	4.3	4.2
시가평가차액의 당기손익 반영 타당성	3	3.5	3	3.3	3.3	3.4
유가증권 시가평가 옵션 제공시 옵션 선택 가능성	3	2.8	3	2.9	3	3.1
시가평가차액의 기타포괄손익 반영 옵션 선호 정도	3.5	2.8	4	3.4	3.7	3.3
주식이나 사채의 시가평가에서 시가를 구하는 어려움	4	3.5	3.8	3.6	3	3.5
부채도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동의하는 정도	2.5	2.3	2.8	2.5	2.7	2.5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면 손익규모 큰 정도	3.5	3.8	2.3	3	3.3	3.2
유가증권 손상차손 인식 회계기준의 명확성	2.5	3	3.3	3.1	3	3
손상차손 및 환입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가능성	2	2.8	3.3	3	3	3.1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대손충당금 규모 과다 정도	3.5	3.3	3.5	3.4	3.3	3.4
대손충당금이 규제기관의 요구량에 비해 많은 정도	4	3.5	3.8	3.6	3.3	3.7
대출채권을 시가평가시 현재 대비 대손충당금 증가 정도	2.5	2.5	3	2.8	3	2.8

주 : () 안은 응답 은행 수, 숫자는 평균값

금융상품을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중에서 자의로 분류할 수 있을 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기를 원하는 정도는 4대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우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시가평가차액의 기타포괄손익 반영 옵션을 선호하는 정도는 지방은행, 특수은행, 4대 은행, 외국계은행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포괄손익 반영 옵션의 선호는 시가평가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는 질문의 응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시가평가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의 타당성을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유가증권 시가평가 옵션이 주어졌을 때 옵션 선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사채의 시가평가에서 시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의 시가평가 타당성에 대한 응답과는 대조적으로 부채의 시가평가에는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다(국내은행 평균 2.5). 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때 손익규모가 크다고 전망할수록 부채의 시가평가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시가평가에 대해 3개 은행이 긍정적으로 평가(숫자 4를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 은행이 비선호를 표시(이 가운데 3개은행은 숫자 1을 선택)하여 평균적인 평가는 어떻게 은행을 그룹화하는지에 상관없이 공히 부정적이다.

대손충당금에 대한 질문에서 국내은행은 규제당국의 대손충당금 가이드라인이 조금 과다하다고 대체적으로 평가(평균 3.42)하고 있으며, 국내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요구량에 비해 약간 더 설정(평균 3.6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채권을 시가평가할 때 현재에 비해서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이 질문에 대한 10개의 응답 중에서 8개가 숫자 3을 선택).

4. 시사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기된 회계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중의 하나는 회계기준의 복잡성 때문에 금융위기의 발현과정에서 파급을 제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의 복잡성은 회계기준에 의해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금융기관 회계담당자들이 회계기준을 명료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원인이 되고, 또한 생산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유가증권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 K-IFRS에서 이에 대한 고려 및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이 시가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예상외로 시가를 구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평가 옵션을 택할 가능성에 대해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가평가에 대한 외부평가 의존도가 감소하거나 시가평가 대상 자산이 증가할 경우 시가평가 옵션을 택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금융기관 자체의 공정가치 평가 능력 제고와 신뢰성 있는 외부평가 인프라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에서 나타나는 손익의 전환 혹은 처분이익의 상대적 크기 증가가 이익조정 행위에서 초래된 결과일 경우 공정가치 평가에 의한 회계처리의 장점이 훼손되는 부분이므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VII. 요약 및 개선방향

재무제표에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최대한 적절하게 나타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될 것이다. 이 경우 평가차익이 대부분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유가증권 평가로 인한 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거래되는 금융상품은 특히 그 구조가 복잡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전문지식과 시스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의 공정가치를 적절히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매수 및 매도 호가 또는 거래가격이 실종된 비활성시장에서는 현재의 공정가치 측정시스템만으로는 더 이상 유용한 공정가치 정보를 확보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공정가치 평가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공정가치를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정보 유용성 측면이나 이익거래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공정가치에 의한 측정이 바람직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2007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를 심도 있게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산의 버블이 발생했거나 이러한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는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고, 특히 비활성시장에서 공정가치를 적절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관련 연구들도 금융상품에 공정가치 회계를 적용할 때 이를 적절히 측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를 비롯한 규제기관들에서도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타당성은 인정하되 세부적으로 공정가치 회계를 적용하는 과정, 특히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을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회계시스템, 특히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관련된 회계기준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대폭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 회계처리를 단순화시켜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부의 부채를 제거시키려는 일환으로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금융상품의 손상, 그리고 파생상품에 관련된 위험회피회계를 전면 개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2011년까지는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고,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회계기준은 이미 2009년에 완료되어 공표된 상태이다. 또한 자산손상에 대한 회계기준도 종전의 발생손실모형이 기대손실모형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특히 공정가치의 정의 및 평가에 대한 회계기준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미 공개초안이 공표되었고, 2010년 중에 확정될 예정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였다. 공정가치가 유출가치로 정의되고 있으며, 비활성시장을 겨냥하여 구체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평가에 관련된 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고자 본 연구는 특히 독립성을 가진 전문가의 입장에서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기관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기관 제도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장제도에 근거한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금융기관이 앞으로 대폭 개정될 공정가치 평가에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관련 기준 및 제도 상황 하에서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각 주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한다.

〈금융기관〉

- ① 금융기관은 언제나(스트레스기간 포함)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가치평가를 검증하는 능력(system 포함)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 가치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방법과 이를 검증하는 건전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함.
 - 평가모형이 의도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사용 전에 독립적이고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함. 또한 평가모형은 다른 프로세스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건전한 내부 및 외부 감사를 거치도록 함.
 - 가치평가를 결정하는 엄격하고 일관성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함.
- ②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진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분류가 금융상품의 관리 및 가치평가 능력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③ 금융기관은 가치평가에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있는 입력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정보를 추가로 반영하여 가치평가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금융기관은 외부에 제공하는 재무보고서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경제적 실질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가치평가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정보(평가방법, 평가치 변동의 민감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회계기준 제정기관〉

- ① 상각후원가측정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되, 가능한 한 원가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도록 한다.
- ②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한 이를 권장하지 않도록 한다.
- ③ FVO(공정가치선택권)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한 FVO의 활용을 권장하도록 한다.
- ④ 전문적/객관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특히 비활성시장(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과 복잡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다.

〈외부감사인〉

- ① 기업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 산출정보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기업이 공정가치 평가를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③ 기업이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감독기관〉

- ①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관리 및 가치평가 기준을 평가해야 하며, 자본 적정성의 평가에 당해 평가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 ② 기업이 사용하는 공정가치 평가모형의 적합성과 여기에서 이용되는 기초변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공정가치 평가기관〉

- ①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를 위하여 시장제도에 근거한 평가기관제도를 확립하도록 한다.
- ② 평가기관은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적립하고 신뢰받는 평가기관이 되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투자자나 채권자 그리고 신용평가기관들과 같은 정보이용자들도 공정가치 평가기준을 재개정하고 기업이 실제로 이를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특히 회계 기준이 학술적인 접근방식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이용자들이 평소에 큰 관심이 없다가 실제로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이르러 불평을 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보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없이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달성하는 길이 요원하게 보인다.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는, 특히 이의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적절히 회계처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특히 금융기관의 대외적인 신뢰성을 좌우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이의 적절한 운용은 Korea discount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각 관련 주체들이 합심하여 금융상품을 적절히 식별·분류하고, 공정가치 평가를 비롯하여 관련된 회계처리를 적절히 수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특히 K-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이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전문가를 통한 논리개발과 문제의 해결은 필수불가결한 절차가 되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및 기타 회계처리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첨부〉 설문서 표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시가평가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금융연구원 노형식 박사 드림

우선 귀행의 감사보고서에서 취득한 금융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 은행의 2007년/2008년 금융상품 관련 주요 정보〉

(단위 : 억원)

	2008년		2007년	
〈대차대조표〉				
유가증권		365,923		323,294
1. 단기매매증권	19,133		51,653	
2. 매도가능증권	258,553		192,640	
3. 만기보유증권	75,529		73,685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2,708		5,916	
대출채권		1,453,418		1,254,053
대손충당금		(23,692)		(18,756)
〈손익계산서〉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87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263		307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233		10,433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529		1,283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79)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353)		(257)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61)		(78)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1,672)		(159)
대손상각비		(9,289)		(4,596)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포괄손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3,782)		(784)

주 : 1) 관련 이자수익과 배당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손익은 제외하였음.

2) 금융부채, 파생상품 및 관련 손익은 제외하였음.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1.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행의 감사보고서에는 현행 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1) 구분에 대한 현행 회계기준이 명확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불명확)

(매우 명확)

○---○---○---○---○

1 2 3 4 5

2) 상당히 은행의 자유재량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없음)

(매우 많음)

○---○---○---○---○

1 2 3 4 5

3) 귀행이 자의로 분류할 수 있다면,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중에서 어느 것으로 분류하기를 원하십니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

1 2 3 4 5

2. 유가증권의 시가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십니까?

(전혀 아님)

(매우 타당)

○---○---○---○---○

1 2 3 4 5

2) 시가평가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아님)

(매우 타당)

○----○----○----○----○

1

2

3

4

5

*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요?

()

()

()

3)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option**”이 주어진다면, 귀행은 시가로 평가하는 OPTION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님)

(가능성 매우 높음)

○----○----○----○----○

1

2

3

4

5

4) 시가평가차액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할 수 있는 option이 있다면 귀행은 어느 곳에 반영하시겠습니까?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

1

2

3

4

5

5) 주식이나 사채의 시가평가에서 시가를 구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으신가요?

(전혀 없음)

(매우 어려움)

○----○----○----○----○

1

2

3

4

5

*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
 ()
 ()

6) 부채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아님)

(매우 당연)

○---○---○---○---○
 1 2 3 4 5

* 귀행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면, 손익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기대하십니까?

(매우 작음)

(매우 큼)

○---○---○---○---○
 1 2 3 4 5

7)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회계기준이 명확하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아님)

(매우 명확)

○---○---○---○---○
 1 2 3 4 5

* 손상차손과 이의 환입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아님)

(매우 높음)

○---○---○---○---○
 1 2 3 4 5

참고문헌

- 김상철 · 백원선 · 이효익, 「유가증권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의 주가관련성」, 『회계학 연구』 제27권 제2호, 2002, pp.117~138.
- 송인만 · 박철우 · 양동훈, 「유가증권 시가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학 연구』 제25권 제3호, 2000, pp.1~24.
- _____, 윤순석 · 최관, 『K-IFRS 중급재무회계』 제2판, 신영사, 2010.
- 임승연 · 최선화 · 송인만 · 고승의 · 이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과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47호, 2008.6.
- 지현미 · 송인만, 「매도가능증권의 선별적 처분을 통한 이익조정」, 『회계학연구』 제34권 제1호, 2009, pp.1~26.
- 금융감독원, 『주요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사례와 시사점』, 회계제도실, 2010.1.
- _____, 『유럽 주요기업의 IFRS 적용 실태』, 회계제도실, 2010.4.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2008,
- 삼정 KPMG, 『국제회계기준에서의 공정가치 측정』, 2007.
-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한국회계학회, 공정가치 심포지엄, 2009.5.
- Allen, F., Elena Carletti, “Mark-to-Market Accounting and Liquidity Pricing,”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hicago, 2008.
- Ball, Ray,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Pros and Cons for Investors,”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2006, pp. 5~27.

- Barth, M. E., "Fair Value Accounting: Evidence from Investment Securities and the Market Valuation of Banks," *The Accounting Review* 69 January 1994, pp.1~25.
- _____, "Fair Value Accounting: Evidence from Investment Securities and the Market Valuation of Banks," *The Accounting Studies* 4, 1994, pp.205~229.
- _____, W. R. Landsman and M. H. La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46 No.3, 2008, pp.467~498.
- Bartov, E, "The Timing of Asset Sales and Earnings Manipulation," *The Accounting Review* 68, October 1993, pp.840~855.
- Brunnermeier, M., A. Crocket, C. Goodhart, M. Hellwig, A. D. Persaud and Hyun Shi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Financial Regulation," 2009.1.
- Chambers, D., T. J. Linsmeier, C. Shakespeare, and T. Sougiannis, "An Evaluation of SFAS No.130 Comprehensive Income Disclosures," *Working Paper*, 2006.
- Danbolt, Jo and William Rees, "An Experiment in Fair Value Accounting: UK Investment Vehicles," *Working Paper*, 2007.
- Demski, Joel, H. Lin and D. Sappington, "Asset Revaluation Regulation with Multiple Information Sources," *The Accounting Review* Vol.83 No.4, 2008, pp.869~891.
- Epstein, R. A. and M. Todd Henderson, "Marking to Market: Can Accounting Rules Shake the Foundations of Capitalism?"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hicago, 2009.

- Hermann, D., T. Inoue, and W. Thomas. "The Sale of Assets to Manage Earnings in Japa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1, March 2003, pp.89~108.
- Hirst, D., and P. Hopkins, "Comprehensive Income Reporting and Analysts' Valuation Judgmen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Supplement), 1998, pp.47~74.
- Hunton, J., R. Libby and C. Mazza, "Financial Reporting Transparency and Earnings Management," *Working Paper*. 2006.
- Landsman, W. R., "Fair Value Accounting for Financial Instruments: Some Implications for Bank Regulation," *BIS Working Paper* No.209, 2006.
- Lee, Y. J., K. R. Petroni and M. Shen., "Cherry Picking, Disclosure Quality, and Comprehensive Income Reporting Choices: The Case of Property-Liability Insurer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006, pp.665~692.
- Merton, R. C., "On the Pricing of Corporate Debt: The Risk Structure of Interest Rates," *Journal of Finance*, May 1974, pp.449~470(Chapter 12 in Continuous-Time Finance).
- Nelson, M. W., J. A. Elliott, and R. L. Tarpley, "How Are Earnings Managed? Examples from Auditors," *Accounting Horizons(Supplement)*, 2003, pp.17~35.
- Plantin G., Haresh S., H. S. Shin, "Marking to Market: Panacea or Pandora's Box?"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46 No.2, 2008, pp.435~460.
- Watts, R.,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 I: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Accounting Horizons* 17, September 2003, pp.207~221.

_____, “What has the Invisible Hand Achieved?”,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36, 2006, pp.51~61.

Wyatt, A., “The SEC says: Mark to Market,” *Accounting Horizons*, March 1991, pp.80~84.

FSR, “Financial Stability Review: Valuation and Financial Stability,” 2008.10.

IASB, “Exposure Draft : Fair Value Measurements,” 2009.5.

_____, “Financial Instruments: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IFRS No.1109, 2009.

_____, “Exposure Draft : Financial Instruments: Amortised Cost and Impairment,” 2009.9.

_____, “Exposure Draft : Fair Value Option for Financial Liabilities,” 2010.6.

IVSC, “Valuation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2007.

SEC, “Report and Recommendations Presented to Section 133 of the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Study on Mark-To-Market Accounting,” 2008.12.

Abstract

IFRS and Fair Value Accounting for Financial Instruments

Over the past decade, Korea has made numerous attempts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in order to enhance overall economic competitiveness. As part of this aim, Korea will mandate that listed companies implement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from 2011. IFRS is expected to bring fundamental change to Korea's accounting environment, with one of the main new features being its extensive use of fair value accounting. This paper investigates the justifications for fair value accounting, as well as the potential drawbacks in expanding its use. Implications for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financial firms, external auditors, and supervisory authorities are also addressed.

한국금융연구원 자료판매 코너

총판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02-394-0337)

지 역	서 점 명	전 화 번 호	위 치
서 울	본사 직영서점	(02) 734 - 6818	한국언론재단빌딩 www.gpcbooks.co.kr
	교보문고(본점)	(02) 397 - 3628	광화문 사거리 www.kyobobook.co.kr
	영풍문고(본점)	(02) 399 - 5632	종각 www.ypbooks.co.kr
	(강남점)	(02) 6282 - 1353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리브로 올지	(02) 757 - 8991	을지로 입구 www.libro.co.kr
	서울문고 (반디앤루디스)	(02) 6002 - 6071	삼성역(무역센터 내)
부 산	영광도서	(051) 816 - 9500	서면로타리
	동보서적	(051) 803 - 8000	태화백화점 옆
광 주	삼복서점(운남점)	(062) 956 - 3888	신사 사거리
인터넷서점	yes 24	www.yes24.com	
	알라딘	www.aladdin.co.kr	

※ 위 코너 외에 교보문고 및 영풍문고는 각 지방 분점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송인만(宋寅萬)

■ 약력

- 성균관대학교(경영학 학사)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경영학 박사)
- USCPA(Wisconsin)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학부장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KASB Board Member)
- 한국회계학회 회장(KAA, President)
- 현)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경영학부) 교수

■ 주요 논저

- Additional Evidence on the Information Content of Dividends(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1986.)
- The Incremental Information Content of SFAS No.33 Income Disclosures over Historical Cost Income and Its Cash and Accrual Components (Accounting Review, 1989.)
- 기업합병의 동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경영학연구, 1991.)
- The Role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Stock Market Liberalization (Advances in International Accounting, 2003.)
-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한 차별적 시장반응(회계학연구, 2005.)
- Effects of Derivatives on Bank Risk(Review of Basin Financial Market and Policies, 2006.)
- 보고이익 부호전환의 추가적인 정보효과(회계학연구, 2007.)
- 분기별 이익조정 형태(회계학연구, 2008.)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과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 제고에 대한 연구(회계와 감사연구, 2008.)
-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이익조정과 이익조정방법 선택에 미치는 영향(회계학 연구, 2008.)
- 매도가능증권의 선별적 처분을 통한 이익조정(회계학연구, 2009.)
- 비감사서비스의 유형과 감사인의 독립성(회계학연구, 2009.)

노형식(魯炯植)

■ 약력

- 서울대학교(경제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경제학 석사)
- 런던정경대학 대학원(재무경제학 석사)
- 일리노이대학 대학원(경제학 석사)
- 일리노이대학 대학원(경제학 박사)
- 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주요 논저

-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군별 인사관리시스템 개선(금융 VIP시리즈, 한국금융연구원, 2010.)
- Monetary Policy by Committee(Working Paper, 2008.)
- Essays on Committee Decision Making(학위논문,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07.)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면허권 가치(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8.)

KIF 금융리포트 2011-03

IFRS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2011년 3월 28일 인쇄

2011년 3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태준

발행처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시 중구 명동1가 41 은행회관 5·6·7·8층

전화 : 3705-6300 FAX : 3705-6309

http://www.kif.re.kr ; wmaster@kif.re.kr

등록 제1-1838(1995. 1. 28)

